

황준량의 옥양서원 출향과 『금계선생변무록(錦溪先生辨誣錄)』의 간행 배경에 대한 고찰

권석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고문헌관리학 전공

wordmaker@naver.com

- I. 머리말
- II. 황준량의 생애와 퇴계학맥에서의 위상
- III. 황준량 출향에 대한 변무과정
- IV. 『금계선생변무록』의 구성 및 형태서지적 고찰
- V. 맺음말

I. 머리말

변무(辨誣)는 억울한 일에 대해 변별하여 밝히는 것으로, 변무록(辨誣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일컫는다.¹⁾ 조선시대의 변무는 종계변무(宗系辨誣)와 같은 국가 주체의 변무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파나 서원과 같은 집단으로, 다시 개인이나 가문 등으로 주체가 다양하고 광범위해졌다. 또한 실제 현존하는 변무록은 국가보다는 그 밖의 주체, 특히 개인이나 가문이 작성한 변무록의 비중이 더 높다. 조선시대 변무 시작의 주체는 국가였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이 변무의 주체로 나타난 것이다.²⁾

변무록이나 변과록(辨破錄)은 억울함을 토로하거나 상대방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편찬되기도 했지만, 수정 요청 과정이 끝난 뒤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련 과정의 시말(始末)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간행하기도 했다.³⁾

이러한 변무록 가운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헌은 『금계선생변무록(錦溪先生辨誣錄)』으로, 황준량(黃俊良, 1517-1563)의 옥양서원(郁陽書院) 출향(黜享)에 관한 무고(誣告)와 관련한 문헌이다.

변무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역사학, 국문학, 한문학, 서지학, 고문서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사학에서는 주로 국가 차원의 변무외교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으며⁴⁾, 국문학에서는 정응태(丁應泰)의 무고에 대해

1) 변무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과록(辨破錄)이나 변증록(辨證錄), 변정록(卞正錄) 등으로 파생되었다. 조선시대의 변무록은 문헌과 사건 모두를 대상으로 했으나, 변과록의 용어가 형성된 뒤에는 변무록은 사건을, 변과록은 문헌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19세기 말이나 20세기로 접어들며 변증록류의 서명이 나타나면서, 서명의 다양화와 용어 사용 규칙이 느슨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권석창, 「朝鮮時代辨誣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2) 위의 논문, 1-2쪽.

3) 권석창,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의 刊行과 門人錄」, 『서지학연구』 60집(2014), 383쪽.

4) 李成珪, 「明·淸史書의 朝鮮 '曲筆'과 朝鮮의 '辨誣」, 『李公範教授停年記念東洋史論叢』(知識産業社, 1993); 金暉綠, 「朝鮮後期『同文彙考』의 編纂過程과 性格」, 『朝鮮時代史學報』 32집(2005); 金暉綠, 「朝鮮初期 宗系辨誣의 展開樣相과 對明關係」, 『國史館論叢』 108집(2006); 金暉綠, 「조선후기 대중국 변무 연구」, 『空土論文集』 58집(2007); 한명기, 『입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 1999); 한명기, 「17·8세기 韓中關係와 仁祖反正」, 『한국사학보』 13집(2002); 한명기,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푸른역사, 2009); 정병설, 「조선시대 대중국 역사변무의 의미」, 『역사비평』 116집(2016).

변무하는 데 공을 세운 이정귀(李廷龜)의 문학을 다룬 이종찬의 연구⁵⁾와 영남지방 간행 문집을 연구하며 ‘변무록·변증록의 출판과 사회학적 영향을 언급한 장인진의 연구⁶⁾가 있다. 한문학에서는 하세응종가(河世應宗家) 소장(所藏) 『변무(辨誣)』를 통해 그 내용과 의의, 정인홍의 남명학 변호 노력에 대해 살펴본 연구⁷⁾가 있다. 서지학에서는 변무 성공 후의 결과물에 대한 진나영⁸⁾과 김호용⁹⁾의 연구가 있으며, 문헌의 간행과 휘판에 대해 연구하며 변과록에 대해 언급한 김건우의 연구¹⁰⁾가 있다. 고문서학에서도 김건우는 하위지유권(河緯地遺券) 진위(眞僞)논쟁 과정에서 『하충렬공관계변무록(河忠烈公貫系辨誣錄)』의 형성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¹¹⁾ 그 밖에도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의 출판과정을 다루며 변무록계 서적에 대해 언급한 경우¹²⁾와 정시한(丁時翰)이 조부인 정호관(丁好寬)에 대한 변무록을 편찬한 것에 대한 전말을 다룬 연구 성과¹³⁾가 있다. 이처럼 각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변무에 대해 다루었으나 변무록계 서적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아직 권석창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¹⁴⁾

황준량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철학(퇴계학), 한문학, 국문학에서 이뤄졌다. 먼저 철학은 그의 역사의식¹⁵⁾을 비롯하여 퇴계학맥(退溪學脈)에서의 위상¹⁶⁾을 살펴보았고, 한문학에서는 그의 문학과 한시에 대해 중심으로 다루었다.¹⁷⁾ 국문학에서는 경기체가(景幾體歌)에 대한 주세

-
- 5) 이종찬, 「月沙의 문학과 辨誣錄」, 『한국한문학연구』 2집(1977).
 - 6) 장인진, 『嶺南 文集의 文獻의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 7) 전병철, 「『변무』와 내암 정인홍의 남명학 변호」, 『선비문화』 23집(2013); 이상필, 「하세응종가소장(河世應宗家所藏) 『변무(辨誣)』의 내용(內容)과 그 의의(意義) - 정인홍(鄭仁弘)의 이황비판(李滉批判)을 중심으로」, 『영남학』 26집(2014).
 - 8) 진나영, 「朝鮮時代に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의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 9) 김호용, 「『光國志慶錄』에 관한 研究」,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7).
 - 10) 김健佑, 「『關西問答錄』의 간행과정과 휘판시비」, 『장서각』 14집(2005).
 - 11) 김健佑, 「1456년 河緯地遺券의 진위논쟁과 그 의미」, 『역사와 실학』 39집(2009).
 - 12)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28집(2000).
 - 13) 정만조, 「조선 후기 경기북부지역 南人系 家門의 동향」, 『한국학논총』 23집(2001); 정호훈, 「愚潭 丁時翰의 활동과 17세기 후반 南人學界」, 『한국철학논집』 22집(2007).
 - 14) 권석창, 앞의 논문(2013); 권석창, 앞의 논문(2014).
 - 15) 윤천근, 「황준량의 역사의식」, 『退溪學』 2집(1990).
 - 16) 김시황,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 선생(先生)과 풍기지역(豊基地域) 퇴계학맥(退溪學脈)」, 『퇴계학과 유교문화』 30집(2001); 김종석,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의 사상과 퇴계학(退溪學) 계승 양상」, 『퇴계학보』 136집(2014).
 - 17) 강성준, 「금계 황준량의 문학과 사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최재남, 「금계

붕과 황준량의 논의¹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황준량 후손가를 비롯한 영주지역에 거처했던 평해황씨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적이나 고문서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고¹⁹⁾, 2014년에는 황준량의 문집인 『금계집(錦溪集)』이 번역되었다.²⁰⁾

황준량은 생전에 퇴계에게 사사(師事)하였고, 사후에도 퇴계가 직접 제문과 행장을 짓는 등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또한 퇴계에 이어 옥양서원에 배향된 것에서도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록의 평론이나 선현(先賢)들의 평가에 더러 이와 상반되는 혹평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동안의 황준량에 대한 연구는 그의 학문적 문제의식이나 다방면의 성취, 퇴계학맥에서의 위치를 중심으로 다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금계선생변무록』은 변무리는 입장에서 황준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반박하고, 황준량을 옹호하기 위한 긍정적 평가를 채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재반박한 책이므로, 상반된 평가가 나타난 이유를 살펴보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라 생각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황준량의 사후(死後)에 일어났던 옥양서원 출향 사건을 『금계선생변무록』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조선 후기 풍기(豊基)지역에서의 황준량의 위상과 황준량에 대한 상반된 평가에 대한 황준량 후손가의 변무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황준량의 생애(生涯)와 퇴계학맥에서 황준량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에 상반된 황준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이어서 III장에서는 『금계선생변무록』을 중심으로 관찬사료나 선현의 문집(文集)을 참고하여 옥양서원 출향 사건의 배경과 황준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타난 계기, 그에 대한 변무과정을 살펴본 뒤, 변무록 간행 이후의 변화 양상을 황준량 후손가 소장 고문서를 통해

황준량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집(2000); 최석기, 「黃俊良의 智異山 紀行詩에 대하여: 遊頭流山紀行篇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7집(2011).

18) 우용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 황준량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집(1996); 길진숙, 「주세붕의 『죽계지』 편찬과 시가관: 황준량과의 시가편입 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1집(1997).

19) 영주시청 소수박물관 편, 『世居 七百年 영주의 평해황씨 사람들: 2012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영주시청 소수박물관, 2012).

20) 황준량 지음, 강성위·김상환 옮김, 『금계집』(한국국학진흥원, 2014).

알아본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이 글의 중심 자료인 『금계선생변무록』의 구성과 간행과정, 현존본에 대해 알아보고, 황준량 후손가가 변무에 쏟은 노력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변무록의 생성과 파급에 대한 사례로서 『금계선생변무록』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황준량의 생애와 퇴계학맥에서의 위상

육양서원 출향 사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황준량의 생애와 그의 위상(位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출향에 관련한 무고가 그의 관력(官歷)을 비롯한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며, 그의 위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기존 논의와 함께 더 나아가 같은 시기에 황준량에 대한 혹평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1. 황준량의 생애²¹⁾

황준량의 자(字)는 중거(仲舉), 호(號)는 금계(錦溪)이며, 본관은 평해(平海)이다. 고려(高麗)의 시중(侍中)을 지낸 황유중(黃裕中)의 후손이다. 고조(高祖)는 생원(生員) 황연(黃鉦)으로, 영천(永川)에서 풍기(豊基)로 이거(移居)한 뒤로 그 후손이 풍기에 살게 되었다. 증조(曾祖)는 사온주부(司醢主簿)를 지낸 황말손(黃末孫)이며, 조부(祖父)는 황효동(黃孝童), 아버지는 황치(黃棼)인데, 모두 은거(隱居)하여 벼슬하지 않았으며, 어머니는 창원황씨(昌原黃氏) 교수(教授) 한필(漢弼)의 딸이다. 부인은 예안이씨(禮安李氏) 이문량(李文樑)의 딸로, 농암(龍巖) 이현보(李賢輔)의 손녀이다.

황준량은 1517년(중종 11) 7월에 풍기(현재의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리)에서 출생하였는데, 재질(才質)이 남다르게 뛰어나 일찍이 스스로 문자(文字)를 해독하였으며, 말을 하면 곧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기이한

21) 『退溪先生文集』 卷48, 「星州牧使黃公行狀」; 김기빈, 『(韓國文集叢刊 37) 錦溪集(影印標點)』(민족문화추진회, 1989)의 해제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신동이란 칭찬(稱讚)을 들었다.

1534년(중종 29) 진사시(進士試)²²⁾에 나가 시험을 보았는데 시험관이 공의 책문(策文)을 보고, 잘 지었다고 칭찬하여 문명(文名)이 알려졌다. 1537년(중종 32) 생원시(生員試)에 합격(入格)하였고, 1539년(중종 34) 정시(庭試)에서 직부회시(直赴會試)하였다. 1540년(중종 35) 문과(文科) 을과(乙科)에 2인으로 급제하여 권지 성균관 학유(權知成均館學諭), 성주 훈도(星州訓導)에 임용되면서 사로(仕路)에 나아가게 되었다. 1542년(중종 37)에 학유, 1543년(중종 38)에 학록 겸 양현고봉사(學錄兼養賢庫奉事), 1544년(중종 39)에 학정(學正), 1545년(인종 1)에 상주 교수(尙州教授)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해 4월 이전 파직되어 지리산을 유람하며 「유두류산기행편(遊頭流山紀行篇)」을 지었다.²³⁾

1547년(명종 2) 가을 박사(博士)가 되어 조정으로 들어왔고, 그해 겨울 예(例)에 따라 전적(典籍)에 올랐으며, 이듬해인 1548년(명종 3)에 공조 좌랑(工曹佐郎)이 되었으나, 외간상(外艱喪)을 당하였다. 1550년(명종 5)에 상을 마치고, 전적으로부터 호조좌랑 겸 춘추관기사관(戶曹佐郎兼春秋館記事官)으로 옮겼으며, 중종(中宗)과 인종(仁宗) 두 임금의 실록을 편찬(編纂)하는 데 참여하였다가 겨울 병조좌랑(兵曹佐郎)으로 전임되어 「벽불소(關佛疏)」를 올렸다.

1551년(명종 6) 2월 경상도 감군어사(慶尙道監軍御使)에 임명되었다가, 다시 승문원 검교(承文院檢校)에 환차(換差)되었으며, 6월에 추생 어사(抽生御使)에 임명되어 지방 민정을 살핀 다음, 7월에 예조좌랑(禮曹佐郎)으로 옮겼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9월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올랐으나, 전에 그에게 청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바 있는 언관이 ‘성질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물론(物論)이 있다’는 이유로 탄핵하여 체직되었다.²⁴⁾ 그 후 선생은 부모 봉양을 위해 외직(外職)을 자청하여 신녕 현감(新寧縣監)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기민(飢民)을 진휼하고 재정을 잘 운용하였다. 또 문묘(文廟)를 수축하고, 백학서원(白鶴書院)을 창설하였다. 1556년

22) 본래 行狀에는 南省試로 기재되어 있었다. 남성시는 高麗의 國子監試를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시대에 와서는 進士試 또는 生員試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에 시대에 맞게 진사시로 수정하여 기재했다.

23) 최석기, 앞의 논문, 9쪽.

24) 『退溪先生文集攷證』卷7, 「星州牧使黃公行狀」. “姓韓人 案西厓集 有韓智源者 爲李已等 鷹犬云 疑或此.”

(명종 11) 병으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1557년(명종 12) 가을에 조정에서 단양(丹陽)이 피폐하여 특별히 그 임무를 맡을 사람을 선발하였는데, 황준량이 등용되어 단양 군수(丹陽郡守)가 되었다. 재직하는 3년간 조정에 민폐(民弊)에 대해 「단양진폐소(丹陽陳弊疏)」를 올려 10년간 공부(貢賦)를 감면받고²⁵⁾, 단양향교를 중수하여 우탁(禹倬)을 배향하였다. 1559년(명종 14) 임기를 마친 뒤 예조(禮曹)와 병조 정랑(兵曹正郎)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모두 부임하지 않았다. 1560년(명종 15) 성주 목사(星州牧使)에 임용되었다. 성주 목사에 재직하는 동안 전임목사 노경린(盧慶麟, 1516-1568)이 벽진(碧珍) 옛터에 세웠던 영봉서원(迎鳳書院)을 증수(增修)하고, 문묘(文廟)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당시 성주에 교관(敎官)으로 근무하고 있던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과 협력하여 제자를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덕계에게는 교육을 전담시키고 자신은 그 감독(檢督)을 맡아 교육 진흥에 힘써 많은 학자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후학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곡서당(孔谷書堂)을 세우고, 팔거현(八莒縣)에 녹봉정사(鹿峯精舍)를 세워 강학의 터전을 넓혀 주었다. 이즈음 고향인 죽령(竹嶺)에 금양정사(錦陽精舍)를 지어 만년의 강학처로 삼으려 했다. 1561년(명종 16) 성주(星州)에서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간행하고, 「회암서절요발(晦菴書節要跋)」을 지었다. 1563년(명종 18) 봄에 병으로 사직하고 귀향하던 중에 병이 악화되어 3월 11일 예천(醴泉)에서 졸하니 향년 47세였다. 이듬해인 1564년(명종 19) 1월에 풍기 동쪽 내곡(內谷)의 선영에 장사 지냈다. 아들이 없어서 동생인 황수량(黃秀良)의 아들인 지환(之煥, 初名 瑛)을 후사로 삼았다. 풍기 옥양서원과 신녕(新寧) 백학서원에 배향되었다.

2. 퇴계학맥에서의 위상²⁶⁾

황준량의 청년 시절 수학과정이나 퇴계 문하 입문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고찰하기 힘들다. 하지만 『도산급문제현록』을 살펴보면, “기해년

25) 『明宗實錄』, 明宗 12年(1557) 5月 7日 2번째 기사.

26) 이 부분은 김기빈, 앞의 책; 김시황, 앞의 논문; 영주시청 소수박물관 편, 앞의 책; 김종석, 앞의 논문(2014); 황준량 지음, 강성위·김상환 옮김, 앞의 책 등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己亥年) 문과에 급제한 뒤, 선생을 따라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주자서(朱子書)]를 읽고 깊이 감발했다”²⁷⁾는 글이 있어 황준량이 퇴계 문하에 입문하는 과정은 조목(趙穆), 이덕홍(李德弘), 김성일(金誠一), 유성룡(柳成龍) 등 여타 퇴계의 핵심 제자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황준량은 47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는데, 이로 미뤄볼 때 황준량의 수학기간은 여타 다른 제자에 비해 짧았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⁸⁾ 그러나 비교적 짧은 시간에도 황준량은 성리학의 본령(本領)에 도달했고, 퇴계학맥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퇴계로부터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유운룡(柳雲龍, 1539-1601) 언급에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금계(錦溪) 선생은 퇴계(退溪)의 문하에 종유(從遊)하여 만년에 용공(用功)이 가장 친절하였다. 만일 하늘이 수명을 좀 더 연장해주었다면 나는 용문(龍門)의 울림이 선생에게 연속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황준량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하늘이 나를 망친다는 탄식을 발하신 퇴계 선생의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²⁹⁾

『금계집』에 수록된 편지 중 대다수가 스승인 퇴계와 문답한 글인 점과 『퇴계집(退溪集)] 중 권19-20이 모두 황준량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보면 황준량이 생전에 퇴계와 많은 문답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대개 학문이나 독서에 대한 것으로, 퇴계가 발문을 쓴 『이정수언(二程粹言)]의 교정과 편집을 둘러싼 이야기나, 문열서원(文烈書院) 배향의 위치 문제, 『소학(小學)]·『근사록]·『주자서]·『심경]·『낙서(洛書)] 등의 독법에 대한 논의, ‘사칠논변(四七論辨)’에서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리고 황준량 사후에 퇴계는 손수 그의 관에 명정(銘旌)을 썼고,

27) 『陶山及門諸賢錄』黃俊良條. “己亥登第, 從先生得心經·近思錄·朱子書 而讀之, 深有感發.”

28) 『錦溪先生辨誣錄』을 살펴보면, 황준량이 이현보의 손녀사위라는 점과 이현보와 퇴계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며 교유했다는 점을 들어 황준량과 퇴계의 師承關係를 좀 더 이른 시기로 보기도 했다.

29) 『錦溪先生文集(外集)] 卷9 「錦陽精舍完護記文」 附跋. “錦溪先生從遊退溪之門, 晚年用功, 最爲親切 若使天假之年, 吾知龍門之響, 正續於先生無疑矣. 不幸早世, 天喪之歎遽發, 退溪之憫惜, 庸有極乎.”

비통한 마음으로 행장(行狀)을 지어 그의 일생을 기술하고, 제문(祭文), 만사(輓詞)를 직접 지어 그의 넋을 위로했다. 또한 내집과 외집으로 구성된 『금계집』 가운데 내집 4권을 1564년(명종 19)부터 직접 교열하였으며³⁰⁾, 편차를 마친 뒤 이산해(李山海, 1536-1609)에게 부탁하여 발문을 작성하도록 했다.³¹⁾

금양정사는 황준량이 만년에 강학하는 공간으로 기획했던 것이었지만, 황준량은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즐겼다. 이에 퇴계는 「금양정사완호기문(錦陽精舍完護記文)」을 지어, 당시 풍기군수인 조완벽(趙完璧)에게 승려의 역사(役使)를 면제해줌으로써 정성을 다해 정사를 수호할 수 있게 배려해 주기를 청했다.³²⁾

황준량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561년 성주에서 『주자서절요』를 간행하였으며, 「회암서절요발」을 지어 송나라 왕백(王柏)과 하기(何基), 명나라 오눌(吳訥)과 송렴(宋濂) 등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위업을 이황이 완수했다고 하면서 “이 책이 간행되면 『근사록』과 함께 사서(四書)로 올라가는 계단이 될 것이며, 그 규모의 방대함과 심법(心法)의 엄정함은 곧 앞의 네 선생³³⁾이 밝혀내지 못한 점이 더 있을 것이다”³⁴⁾라고 하기도 했다. 퇴계가 평소 주자의 편지 글을 매우 중시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는 스승의 학풍을 인식하여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퇴계의 황준량에 대한 인정은 1556년에 영천 군수(永川郡守) 안상(安瑋)에게 보낸 편지인 「의여영천수논소수서원사(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³⁵⁾에서 드러난다. 당시 소수서원의 유사(有司)로 있던 김종문(金仲文)이 거만한 태도로 유생들을 아이 취급하면서 알아보는 말을 하자, 유생들이 격노하여 서원을 비우는 등 말썽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관청의 개입을

30) 『退溪先生文集』 卷23 「與趙士敬(甲子)」. “見閱錦溪集, 欲改吳訥稱庵 而忘其齋號…….”

31) 『退溪先生文集(內集)』 「跋文(李山海)」. “一日, 公之季秀良氏 持此集來示余. 且致退溪先生之命曰 予既敘行狀 且撰是集. 知錦溪者 莫如某, 盍索某一語, 錄諸卷尾乎.”

32) 『退溪先生文集(外集)』 卷9 「錦陽精舍完護記文」. “倘或後來寢遠寢亡, 官不知來由, 視同在刹之例, 役使僧人, 今不得存接, 則無人守護, 精舍鞠爲茂草. 丁寧欲望仁慈, 深軫此意, 具由下完帖于舍中及雜羅所. 自今以後, 守護僧永除役使, 俾得專意守護, 庶其家子弟等輩, 往來讀書於其中, 因以小釋主人有志未就之餘憾, 豈不幸甚.”

33) 孔子, 孟子, 程顥, 程頤를 의미한다.

34) 『退溪先生文集』 「晦菴書節要」. “將見是書之行, 與近思錄 同爲四書之階梯. 而其規模之大, 心法之嚴 則又有四先生所未發者矣.”

35) 『退溪先生文集』 卷12 「擬與榮川守論紹修書院事」.

자초하게 되었다. 이때 퇴계가 수습책으로 제시한 것은 안상이 날자를 정해 유생들을 서원에 모이게 하고, 풍기의 황준량과 영천(永川)의 박승임(朴承任, 1517-1586)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각각 그 고을의 선비들에게 편지를 보내 불러들이고, 선비들이 모이면 이후 크게 경장(更張)하여 서원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이때 퇴계는 황준량과 박승임을 각기 후진(後進)들이 우러러보는 자이자 한 지방의 인도자로 소개하였고, 실제 황준량은 소수서원의 상황 수습에 앞장서기도 했다. 풍기지역 사림은 황준량의 공적과 학문을 인정하여 1662년(현종 3) 옥양서원에 퇴계를 주향으로 배향한 뒤, 1669년(현종 10)에 황준량을 종향으로 배향하였다. 이는 풍기지역 사림들이 황준량을 퇴계학의 계승자로 생각하고, 그를 통해 퇴계학을 수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황준량에 대해 상반되는 평가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기가 탁월하여 글을 잘 지었다’³⁶⁾는 것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질이 안정되지 못하고 또 물론이 있다’³⁷⁾는 것이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퇴계선생문집고증(退溪先生文集攷證)』에서 언관이 양심을 품은 것으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비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외에도 황준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었다. 바로 이상이나 김장생 등이 황준량에 대해 ‘간흉한 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황준량이 이들에게 아첨하여 선량한 이들을 해쳤다’는 것이다.³⁸⁾ 결국 이러한 부정적 평가는 황준량의 출향에도 영향을 미쳐, 200여 년에 걸친 번무가 일어나게 된다.³⁹⁾ 다음 장에서는 황준량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그에 영향을 받은 출향(黜享)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Ⅲ. 황준량 출향에 대한 번무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준량의 옥양서원 배향은 풍기지역에서

36) 『明宗實錄』, 明宗 15年(1560) 7月 18日 1번째 기사. “才氣卓越, 能屬文.”

37) 『明宗實錄』, 明宗 6年(1551) 9月 28日 2번째 기사. “性不安靜, 又有物論.”

38) 『沙溪遺稿』 卷3 「答金獻問目」; 『打愚先生遺稿』 卷4 「黃俊良黜享議 丁卯」.

39) 자세한 내용은 III장에서 번무과정을 기술하며 제시하겠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옥양서원에서 출향된다는 것이 당시에 큰 사건이었고, 이를 막으려는 많은 노력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풍기지역뿐만 아니라 안동, 예안, 예천 등 주변 지역의 사람까지도 참여했다. 또한 이후 황준량의 출향 문제는 조정에서도 논의되면서, 대신들 간의 의논을 거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옥양서원 출향 사건을 『금계선생변무록』과 관찬사료, 여러 선현의 문집을 통해 세 시기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1차 변무기(辨誣期)는 1674-1675년 사이로, 순흥인(順興人)에 의한 1차 출향이며, 2차 변무기는 1686-1689년의 조정의 논의로 인한 2차 출향, 3차 변무기는 1865년 이후 변무록 간행과 관련한 사항이다.

1. 1차 변무기

1차 변무기는 1674년(현종 15)부터 1675년(숙종 1)까지로, 이때 순흥인들이 옥양서원에 난입(亂入)하여 강제로 위판(位版)을 철거하는 일이 있던 후, 다시 환향(還享)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금계선생변무록』의 「옥양서원종사후순흥인작변무사실(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辨誣事實)」(이하 「변무사실」로 약칭)에 수록되어 있다.⁴⁰⁾

현묘 임인년(1662)에 옥양서원이 세워지고, 퇴계 선생을 입학하였다. 그 뒤 도산동주(陶山洞主) 구재(鳩齋) 김계광(金啓光)과 선성(宣城) 사림이 금계가 퇴계의 고제(高第)이며, 평소에 깊이 애지중지하셨으니, 새로 건립한 서원에서 아울러 종사해야 함을 논의했다. [...]

갑인년(1674) 순흥에 사는 서찬(徐璨), 권성기(權聖基) 등 24인이 원장 안만유(安晩瑜)와 위판(位版)을 철거할 것을 남몰래 모의하였는데, 대개 목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날 순흥인 가운데 소수서원의 유사(有司)가 된 자가 있었는데, 거재(居齋) 유생(儒生)을 업신여겨(侮簿)서 권당(卷堂)하는 데 이르렀다. 노선생(퇴계)이 금계와 박승임 두 공이 근처에 살고 있으므로 말아서 관장하게 했다. 금계는 퇴계의 백록동규(白鹿洞規)에 따라 학령을 엄하게 하고, 상벌을 밝혀 쾌만(悻慢)한 사람들을 인도했고,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삭출(削黜)하여 곁에 있지(厠跡) 못하게 했다.

40) 「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辨誣事實」의 내용은 1차 변무기뿐 아니라 2차, 3차 변무기와 관련된 사항도 기재하고 있어, 변무과정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뒤의 2차, 3차 변무기를 논의할 때도 이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로 인해 급계를 원망하게 되었다. [...]

처음 종시할 때는 [...] 도유(道儒) 공론(公論)에 의해 움직일 수 없었으나, 안만유가 원임(院任)이 되니, 모두 순흥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소수서원 원장 김윤하(金潤河)와 함께 작당하여 이 같은 변을 저질렀다. 모든 도의 사람이 성을 내며 만유와 윤하를 성토했다. [...] 군흥이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주천(舟川) 강유선(康惟善)의 갈명(碣銘)에 ‘학정정거관유지사(學正停擧館儒之事)’에 적힌 것이 우연히 급계와 성명이 같음을 근거로 출향의 증거로 삼아, 우매한 사람들을 회유했다. [...]

그리고 (군흥은) 태학(太學)에 글을 보내며 출향은 공론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도유(道儒)는 사학(四學)에 연장(聯章)하여 퇴계 선생의 행장·제문·만시에 있는 말로 입증하였다. 그런 뒤 태학에서 흥도(兇徒)를 삭벌(削罰)하고, 환안(還安)을 회유(回諭)했다.⁴¹⁾

옥양서원은 1662년 창건된 뒤 퇴계 이황을 배향했고, 이어 1669년 급계 황준량을 배향했다.⁴²⁾ 그 뒤 1674년에 서찬, 권성기 등이 황준량의 위판을 철거할 것을 모의했는데, 그 이유는 대개 지난날 소수서원의 유사로 있던 김중문이 말썽을 부린 것에 대해 황준량과 박승임이 이 일을 맡아 관장하며, 백록동규에 따라 엄히 처리했기 때문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처음 황준량을 옥양서원에 배향할 때는 공론 때문에 반발할 수 없었으나, 1674년에 비로소 서원에 난입하여 위판을 철거하는 변을 일으켰다. 이에 사람들은 작변인(作變人)들을 성토했다. 결국 작변인들이 관의 처벌을 받는 상황에 이르자, 강유선의 묘갈문에 기재된 ‘학정이 관유를 정거(停擧)시킨 일을 바탕으로, 강유선을 정거시킨 학정이 황준량이라 헐뜯으며 사람들을 회유하는 한편 태학에는 공론에 따라 황준량을 출향했다는 글을 보냈다. 이에 도유들은 퇴계 선생께서 직접 쓰신 행장, 제문, 만시 등을 근거로 반박했고, 마침내 태학에서

41) 『錦溪先生辨謬錄』 「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辨謬事實」. “初豐基士林創建郁陽書院, 顯廟壬寅將入享退溪李先生, 陶山洞主金鳩齋啓光及宣城士林咸以爲錦溪黃先生退門高弟, 平日之愛重最深. 今新院又在其鄉與精舍相望並舉從祀爲宜首發享議 [...] 甲寅順興居徐瑛·權聖基等二十四人, 陰與院長安晚瑜謀撤去位版, 蓋爲逞宿憾也. 先時順興人有爲紹修有司者 侮薄居齋儒生, 至於卷堂. 老先生以錦溪與朴嘯臯承任二公居近屬掌之. 錦溪乃以老先生所定白鹿洞規, 嚴學令明賞罰 以導之. 其悻慢 不率教者皆削黜之. 使不得廁跡. 由是多挾憾於錦溪 [...] 始自從祀時 [...] 伏於道儒公論 不敢動 至是晚瑜輩爲院任則皆興人也. 又與紹修院長金潤河, 附同作此變. 一道士林齊憤聲討晚瑜潤河特施道罰 [...] 於是羣兇雖欲掩盖自道而無以籍其口矣. 乃以康舟川惟善碣文有云 學正停擧館儒之事 而偶與錦溪同姓名 据撫傳會極口譁張把作可黜之證 而誘其姻戚鄉里之愚悻蔑識者. [...] 爲文認通太學謂爲公論所共黜而詆毀之說, 因有紀極道儒遂聯章于四學證之, 以老先生所撰錦溪行狀·祭文·輓詩中語辨明之. 然後自太學削罰兇徒回諭還安.”

42) 『錦溪先生辨謬錄』 「順興人作變後本鄉通道內文(甲寅)」, 「甘泉道會通道內文(李懶隱)」.

작변인들을 처벌하고, 1675년 황준량을 환향⁴³⁾하는 것으로 일이 일단락 되었다.

‘학정이 관유를 정거시킨 일’이란 강유선(康惟善, 1520-1549)에 대해 소재(蘇齋)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이 쓴 갈명과 일송(一松) 심희수(沈喜壽, 1548-1622)가 쓴 묘지명(墓誌銘)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다. 각 글에 나타나는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인종(仁宗)이 재위하였을 때, 많은 선비들이 눈을 씻고 주시하며(拭目) 지치(至治)를 기대했다. 이에 대학생이 장을 올려 정암(靜庵)의 복작(復爵)을 청하고 사추(士趨)를 밝혔는데, 모두 강유선의 글이었다. 충분(忠憤)이 격렬하여 위로 천심을 움직일 정도였다. [...] 학정 황준량이 권신의 뜻을 받들어 ‘군(강유선)이 반궁(泮宮)에 있을 때 궤론(詭論)하기를 좋아했다’ 하여 [...] 정거하였다.⁴⁴⁾

인종이 즉위하자, 조야(朝野)가 눈을 씻고 주시하며 태평한 세상을 기대하였다. 관학과 일반 선비들(韋布)은 기묘대현(己卯大賢)인 정암 조광조(趙光祖)의 복작을 청하여 장(章)을 세 번 올렸는데, 모두 공(강유선)의 솜씨였다. 문사(文辭)가 준상(峻爽)하며, 논의가 격렬(激烈)하여 천심에 이르러 감동시킬 수 있을 정도였다. [...] 관관(館官) 황씨 성(姓)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의 뜻에 아첨하며 ‘공이 반궁에 있을 때 궤론을 주장하여 위법(危法)에 저촉되었다’ 하여 [...] 강제로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정지시켰다.⁴⁵⁾

이 두 글을 통해 황준량이 당시 권신에게 아첨하여, 강유선이 궤론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정거시켰다는 이야기가 출현하게 되었다. 여기서 궤론은 인종이 즉위한 1545년에 강유선이 조광조의 복작을 주장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당시의 변무는 「도내통태학문(道內通太學文)」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작변인이 태학에 황준량을 무고하는 글에 반박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황준량이 학정을 지낸 것은 사실이나, 권신에 빌붙어 현인을 해쳤다는

43) 『錦溪先生辨誣錄』 「還安告由文(乙卯)」.

44) 『蘇齋先生文集』 卷10, 「康上舍碣銘 并序」. “當仁廟在位, 多士拭目, 以爲至治可期. 於是, 大學生上章請復靜庵官爵, 以明士趨, 皆君筆也. 忠憤激切, 上動天心. [...] 學正黃俊良受權臣旨, 言君嘗在泮, 好爲詭論. [...] 猶停赴舉.”

45) 『一松先生文集』 卷8 「康舟川墓誌銘 并序」. “仁廟卽阼, 朝野拭目, 想望太平. 館學韋布, 請復己卯大賢趙靜庵官爵, 上章至三, 皆出公手. 文辭峻爽, 論議激烈, 能致天心感動. [...] 有館官黃姓人, 媚承當路風旨, 謂公在泮主詭論, 將中以危法 [...] 猶勒停應舉.”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주천이 정거된 것은 무신년(1548), 정암의 복작을 청한 것은 을사년(1545)이니, 시간적 차이가 있으므로, 정거당한 것은 반드시 이 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소재와 일송이 정암을 신구(伸救)한 것을 직언하지 않고, 여러 차례 말을 바꾸어 기재한 것이다.

금계는 갑진년(1544)에 학정을 지냈으며, 을사년(1545)에 상산(商山)으로 분교(分教)되었고, 무신년(1548)에 공조좌랑으로 있으며 외간(外艱)을 당했다. 이 사실이 퇴계 선생이 쓰신 글에 있다. 연세의 선후가 서로 어긋나고, 양현이 전하는 것이 명백하니 강유선을 정거시킨 학정은 다른 사람일 것이며, 결코 금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⁴⁶⁾

이를 통해 당시의 변무는 강유선의 갑문 및 묘갈문과 퇴계가 쓴 황준량의 행장을 대조하여 그 차이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황준량이 학정을 지낸 때는 1544년이며, 1548년에는 공조좌랑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강유선이 학정에게 정거당했으니, 이는 시간과 벼슬의 차이가 있으므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홍여하(洪汝河, 1620-1674)가 권윤(權鈞)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황준량을 옹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때문에 그 내용이 『금계선생변무록』에 수록되어 있다.⁴⁷⁾

46) 『錦溪先生辨謬錄』 「道內通太學文」. “至若康舟川誌碣有所謂太學請復靜庵趙先生官爵之後, 學正停舉舟川之說 而錦溪曾經學正偶同姓名以之謂錦溪附權而害賢, 此尤虛無之說也. 盖舟川停舉在戊申, 靜庵復爵在乙巳 則其間已隔四載. 舟川之伸救靜庵固無可疑 而其被停舉未必因此事, 故盧蘇齋沈一松二公未嘗直言其以伸救靜庵 而亦必數轉其語曰 言君在泮好爲異論云 則已不可勒謂之害賢況錦溪之爲學正實在甲辰 而乙巳分教商山, 戊申以工郎丁外艱, 昭載於退溪記實之文 則年歲之先後相左, 兩賢所傳亦自明白所謂停舉之學正 必別有其人, 非指錦溪也. 決矣.”

47) 『錦溪先生辨謬錄』 「洪木齋汝河答權子韜鈞書」; 『木齋先生文集』 卷4 「答權子韜」. 이 편지글은 1674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강유선의 停舉에 황준량이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황준량의 등과 시기를 더 이른 시기로 여긴다는 것이며, 강유선이 정말 정사되었다면,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요지였다. 그러나 실제 황준량은 강유선이 정거되었을 당시 이미 '학정'을 거쳐 '공조정랑'을 지냈으므로, 등과 시기가 이르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 강유선은 1549년에 역모에 참여했다는 무고를 입고 죽었으므로, 정거된 뒤 탄핵이 이뤄졌다. 그러므로 홍여하의 논의는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홍여하가 황준량을 옹호하려는 생각을 가졌음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 2차 변무기

2차 변무기는 1686년(숙종 12)부터 1689년(숙종 15)까지로, 1686년 이선(李選, 1632-1692)이 올린 상소⁴⁸⁾로 기인하여 조정의 논의를 거쳐 출향이 이뤄진 후, 1689년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 1634-1704)의 주장에 의해 복향이 허락되기까지의 시기이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변무사실」에 수록되어 있다.

숙묘 병인년(1686) 이참(吏參) 이선(李選)의 상소에서 또한 주천이 정거당한 일로 출향을 청하자, 대신(大臣) 의논 아래에 본도(本道) 도유(道儒) 700인이 사관(查官)에게 변문(辨文)을 올렸고, 사관은 회계(回啓)했다. 중외의 대신, 유신들과 논의했는데, 이선의 말에 동의한 사람이 3인, 병으로 사양한 사람이 4인이었다. 오직 예조의 계문과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 송간(松圃) 이단하(李端夏)의 의논은 퇴계의 말을 믿고, 이를 정변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무고(誣告)한 자들이 승리하여, 다음 해 정묘년(1687)에 아울러 신녕 백학서원에서도 출향되었다.

이에 양 서원(육양, 백학)의 유생이 장(章)을 올렸다. 대개 주천의 지문과 같문은 소재 노수신과 일송 심희수 두 공이 지은 것으로 노 선생이 지은 금계행장 이력과 크게 서로 모순되므로 이른바 정거의 학정은 동명이인(同名異人)이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나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러 선배가 변무문자에 모두 전문(傳聞)의 오류로 이야기했고, 두세 재신(宰臣)은 유독 신필(信筆)로 근거를 삼아 세 번 상소를 올렸으나, 명(命)을 얻지는 못했다.

기사년(1689)에 휴곡(休谷) 김덕원(金德遠)이 우의정이 되어 퇴계정론으로 윤희를 받아 복향되었다.⁴⁹⁾

처음 1686년 이조참판 이선이 상소를 올린 뒤, 중외에 있는 대신과 유신들의 논의를 거쳐서 다음 해인 1687년에 황준량의 출향이 결정되었

48) 『錦溪先生辨誣錄』 「李選信誣斥享疏」; 『承政院日記』, 肅宗 12年(1686) 11月 6日 23번째 기사에 李選의 상소가 수록되어 있다.

49) 『錦溪先生辨誣錄』 「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辨誣事實」. “至肅廟丙寅李吏參李選上疏, 又以舟川被停事執請黜享, 大臣議以下查本道道儒七百人呈辨于查官. 查官回啓又議于中外大臣儒臣和李疏者三人病辭者四人, 惟禮曹啓及朴玄石世采李松圃端夏兩賢之議皆以爲退溪我東之斯文先正 而其於錦溪所以推許愛重者, 優於諸子亦既深歎訾議之虛無則當以退溪之言爲正辨之甚力 而誣者卒勝 明年丁卯與新寧白鶴書院并被黜享. 兩院儒生上章陳辨繼而一道章甫合疏以金進士世鳴鍾爲疏首柳寓軒世鳴權河塘斗寅金蘆洲兒一諸公製疏 盖舟川誌碣盧蘇齋守慎沈一松喜壽二公所撰 而與老先生所述錦溪行狀履歷大相矛盾 則所謂停舉之學正 的是別有同姓名 而漠無聞知. 故諸先輩於辨誣文字 皆謂之出於傳聞之誤 而二三宰臣獨據以爲信筆以故疏 凡三上竟不獲命 己巳金休谷德遠爲右相入啓 質以退溪正論而蒙允復享.”

고, 이 결정으로 인해 옥양서원뿐만 아니라, 신녕의 백학서원에서도 아울러 출향되었다. 그 후 두 서원의 유생들이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소재와 일송이 쓴 강유선의 갈문과 묘지명은 전문(傳聞)의 오류임을 주장하였으나 끝내 환향을 허락받지 못했고, 1689년 김덕원의 발의에 의해 다시 복향이 결정되었다. 이선의 상소에 대해 두 서원의 유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펴는 한편 이선의 상소 조목에 따라 변무를 시도했는데, 이는 「도유사변정문(道儒查辨呈文)」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차 변무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먼저 황준량이 학정을 지낸 시기인 갑진년(1544)과 강유선이 정거된 시기인 무신년(1548)의 시기 선후와 관직을 지낸 차례를 고찰하여 서로 맞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만약 무신년 이전에 강유선이 정거되었다 하더라도, 강유선이 인종계 조광조의 복작을 청한 것은 을사년(1545)으로, 이 역시 황준량이 학정을 지낸 이후이다. 그러므로 이는 별도의 같은 성명의 사람이 있거나 전문의 오류임이 분명하다고 했다.⁵⁰⁾

둘째, 노수신은 애초에 황준량과 종유(從遊)한 적이 없고, 심희수는 연배와 거주가 매우 멀며, 묘지문과 갈문은 주천이 화를 입은 지 60년 뒤에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했다. 그에 반해 퇴계는 황준량과의 종유가 가장 친밀했고, 황준량의 죽음이 퇴계보다 앞서므로, 행적을 찬술한 것에 시말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러므로 퇴계의 신필(信筆)을 버리고, 노수신과 심희수가 전해 들은 문자에 의지하여 논증한다면 원통한 일이 될 것이라 했다.⁵¹⁾

50) 『錦溪先生辨誣錄』 「道儒查辨呈文」. “竊見盧蘇齋守愼所撰舟川碣文在舟川停學時事 而直書學正黃俊良承權臣風旨, 其下卽書是冬爲公西之志云云. 沈一松喜壽所撰誌文 則其言停學事 又書館官黃姓人其下書戊申冬灘叟之喪. 公獨絕紀云云. 是其識碣所記皆是一事 則碣文所謂是冬卽誌文所謂戊申冬也. 可見舟川停學乃在戊申年 而就攷文純公李滉所撰錦溪行狀 則錦溪之陞學正實在甲辰, 乙巳出爲尙州教授, 丁未入爲博士. 其冬例陞典籍, 至戊申則以工曹佐郎丁外艱. 然則以戊申年舟川停學之事 謂出於錦溪之手者豈非爽實之甚乎 今若曰停學不在戊申 而在戊申以前 則又有一說舟川碣文 雖曰學正黃某而錦溪之爲學正在於中廟甲辰, 舟川之陳疏在於仁廟乙巳 而其被停學 又在其後 則其以爲錦溪事者 又豈非無據之說乎 是其所謂承權臣旨者 必別有同姓名之人 而不然則特出於一時傳聞之誤也. 決矣. 今以兩家誌碣行狀中歲月先後歷官次第考之. 豈不的然明甚乎. 此不獨歲月之矛盾而已.”

51) 『錦溪先生辨誣錄』 「道儒查辨呈文」. “尤有所明證可据者 蓋蘇齋之於錦溪初無從遊之素 而一松年輩居住甚遠 又其誌碣撰成出於舟川被禍六十年之後 則傳聞所記語 或爽實其勢固然. 若退溪之於錦溪 則從遊最密. 相與特深而錦溪之歿適先於退溪故行蹟撰述出於師門發明論著始末具備. 正史遷所謂顏淵附驥尾而名益顯也. 錦溪之得此於退溪豈不足爲身後辨白之地乎. 今也捨退溪已定之信筆籍盧沈傳聞之文字. 按爲定論證成其罪於百年

셋째, 황준량이 처음 벼슬할 때 몸과 이름을 모두 더럽혀 사람들 사이에 어울릴 수 없었다면, 비록 퇴계가 잘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수습하지 못했을 것이라 했다. 또한 을사년의 권신은 이기(李芑) 등을 가리키는데, 주천이 화를 입을 당시 퇴계의 형인 대사헌(大司憲) 이해(李滄, 1496-1550) 역시 화를 당해 죽었으니, 만약 황준량이 권간(權奸)에게 붙어 아첨했다면, 퇴계가 곁에 두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 했다.⁵²⁾

이후 항목은 이선의 상소문을 인용하고, 이에 대해 조목에 따라 변무를 시도했다.

넷째, 이선의 상소문에 “준량이 사림에 죄를 얻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다가 개심(改心)하여, 이황을 쫓아 강학하여 겨우 허가를 받았으나, 명로(名路)를 걷지 못하고 죽었다”고 했다. 변무문에서는 이에 대해 심한 무고라 하며, 황준량은 옛 명신 농암 이현보의 집안에 사위로 들어갔는데, 농암과 퇴계의 집안은 거리가 지척이므로, 그때부터 퇴계를 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퇴계가 쓴 행장과 제문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황준량이 초년에 실각하고, 늦게야 사문에 중용했다는 것은 세세히 고찰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⁵³⁾

다섯째, 이선의 상소문에 “금계가 죽은 뒤 백 년이 지나도 사당을 세우지 못했는데, 지난번 배향한 것은 퇴계서원의 공의를 거치지 않고, 다만 풍기와 영천 양읍의 사람이 주장한 것이다. 위관을 환출(還黜)한 뒤에는 또 토주(土主)에게 호소하고 일러 바쳐서, 도신(道臣) 형벌이 낭자했고, 마침내 환배(還配)를 이루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는 당일의 실상이 아니니 이때 약간의 횡의(橫議)하는 무리가 무뎠을 뿐 아니라, 조신(朝紳)까지 현혹시키는 데 이르렀다고 하며 그에 대한 전말을 기재하

之後，又豈非冤痛事乎。”

52) 『錦溪先生辨誣錄』 「道儒查辨呈文」. “若使錦溪初年脚跟不牢做了郎當果如云云之說 則是其筮仕之初，身名俱汚已自不齒於人 雖以退溪之善誘其何能收拾得來耶 又況乙巳權臣卽李芑等也. 當時大禍蔓延舟川之被禍也. 退溪之兄大司憲滄亦被禍而死. 若使錦溪果有附托權奸之事 則退溪於錦溪不但絕之而已 其何以許厠門徒 而稱道愛重 又至於是耶 此實必無之事也.”

53) 『錦溪先生辨誣錄』 「道儒查辨呈文」. “宰臣疏又曰 俊良得罪士林，不齒於人. 後乃改心從李滉講學頗見許可. 然終未能得踐名路而死. 此亦誣之甚者也. 錦溪入贅於古名臣李聶巖賢輔之門. 聶巖所居汾川與退溪之陶山相距咫尺. 錦溪之從遊退溪實自此始. 故退溪於錦溪行狀有曰 滉初識公於先生之門相與從遊最久且密. 愚陋無聞得，公以警發者多. 此所謂先生卽聶巖也. 祭文亦曰 惟淺劣之視公，又非尋常之契托. 服聶巖之高義，綿歲月之屢改. 觀於此則錦溪之登師門越自少時 而其出身又早行世始末 皆師門之所詳知. 故於行狀祭文無不詳記而備錄之. 然則謂錦溪初年失脚晚 乃從遊於師門者 蓋未及細考也.”

었다. 그리고 퇴계가 황준량을 아꼈던 것과 온 도의 선비가 모두 황준량을 퇴계의 고제(高弟)로 여기고 있어서, 공의에 의해 배향한 것임을 기록했다. 그리고 순흥인이 사감을 품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⁵⁴⁾

여섯째, 이선의 상소문에 “금계가 지은 『주자서절요』의 발문이 퇴계의 서문 아래에 있는데 마땅히 빼버려야 한다”는 말에 대해 황준량은 퇴계와 서찰이 오고 가며 논의한 것이 많고, 덕계 오건과도 함께 강명(講明)했으니, 이는 퇴계의 행장과 만사(輓詞)에서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는 퇴계뿐 아니라 문목공(文穆公) 한강(寒岡) 정구(鄭述) 문집에서 고찰해볼 때도 알 수 있는 일임을 이야기했다.⁵⁵⁾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지금 이선의 상소는 실로 날조된 무고(捏誣)의 설을 가볍게 믿어 나온 결과물로, 대현(大賢)의 정론(定論)을 고신(攷信)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⁵⁶⁾

황준량의 출향은 중외 대신과 유신에게 논의하게 한 만큼, 그에 대한 기록도 관찬자료나 문집에 산재해 있다. 이 중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황준량의 출향을 반대했던 인물로는 박세채(朴世采, 1631-1695),

54) 『錦溪先生辨誣錄』 「道儒查辨呈文」. “宰臣疏又言 錦溪歿後百餘年未有爲之立祠者 嚮時之配享退溪書院 不由公議而只出於豐基榮川兩邑之人及其位版還黜之後 又訐訴土主道臣刑扑狼藉遂至還配. 此尤非常日實狀. 伊時若干橫議之輩公肆誣捏久益不止, 以致眩惑朝紳之跡. 於此而著矣. 請悉陳配享顛末及順興人作變之狀焉. 豐基乃退溪遺愛之地 而邑殘力綿尊祀之舉久未遑焉. 非但無爲錦溪立祠也. 粵在壬寅始建退溪書院於郡北, 名曰郁陽. 迨將奉安也. 一道多士咸以爲錦溪以退陶高弟爲士林矜式. 又其平日藏修之所適與書院隔溪相望陞祀廟中允合事 宜陞祀通文初發於禮安, 次發於安東, 又發於醴泉 乃於己酉十二月道儒齋會 而配享焉. 今所謂只出於豐榮兩邑之人者 不其誣乎. 伊時順興若干輩撫其私憾橫生異議. 必欲沮戲者蓋以錦溪嘗掌學紹修其有司之詬薄. 齋儒諸生之悖慢師教者, 并爲嚴斥至有削跡. 由是興人世蕃嫉憾 視以仇讐 而又謂順興欲復之際, 錦溪有所沮撓於其間, 益懷怨毒 以至今日則爲防享可以逞其私也.”

55) 至於以錦溪所撰朱子書節要跋文之在於退溪序文之下, 爲當拔去云者 [···] 其與退溪往復講論尤在於此書, 其在星州與當時儒賢吳德溪健志同義合相與講明者, 亦惟在於此書. 故退溪嘗深嘉而累歎焉. 行狀所謂得朱子書而讀之. 於是, 深有所感發而大耽樂之者, 卽此也. 且其所製挽詞有曰 朱書每與人同讀, 幾憶平生淚共流, 亦此也. [···] 一時名儒鉅賢皆爲尙慕 而從遊門館者 亦多. 其人今不可悉數, 姑以文穆公寒岡鄭述文集攷之. 其祭吳德溪文有曰 曾試教於星巒, 而又得錦溪黃先生之適來刺是州, 聲相應氣相求, 遂成同人之契, 斷金不足喻其利也. 『錦溪先生辨誣錄』 「道儒查辨呈文」. 相與讀八卷朱子之書 而尤有味於主敬窮理之說云云. 又於錦溪既歿四十五年之後, 親祭其墓. 其文曰 先生天姿清秀, 才華超偉, 篤學之志, 晚而愈勤. 及到吾州, 導迪後生. 至今士子 感戴遺化, 久而不忘. 況我愚生, 早蒙知獎. 其所期許受與之意. 蓋出乎尋常. 老而無成, 長負慙悼 而一生欽承. 思不敢失墜者 則又何可以自己云云. 寒岡之尊慕錦溪, 又可見矣.

56) 『錦溪先生辨誣錄』 「道儒查辨呈文」. “今此宰臣之疏實出於輕信捏誣之說 而偶未及攷信於大賢定論也.”

이단하(李端夏, 1625-1689)를 들 수 있다. 실제 이들의 주장은 「유신대신 현의(儒臣大臣獻議)」에 실려 『금계선생변무록』 내에 수록되어 있다.⁵⁷⁾ 또한 이익(李瀾, 1579-1624)의 『성호사설(星湖僿說)』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소문이 파다했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이 역시 변무에 유익한 글로 판단하여 『금계선생변무록』에도 수록되어 있다.⁵⁸⁾

황준량의 출향에 찬성했던 인물로는 김수항(金壽恒, 1629-1689), 이상(李翺, 1620-1690), 김수흥(金壽興, 1626-1690) 등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 역시 이선의 상소문에 근거하여 노수신과 심희수의 글을 믿고 출향을 주장한 것이었다.⁵⁹⁾

그러나 사실 황준량이 권신에게 아첨했다는 논의는 순홍의 작변인이나 이선의 상소 이전에 정인홍(鄭仁弘, 1535-1623)에 의해 조정에서 거론된 바 있었다.

이황이 조식과 성운에 대하여 절개요 이단이라고 하여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였는가 하면, 심지어는 시속을 좇아 세력에 붙고 이익을 탐하여 수치가 없으며 시종일관 권간(權姦)의 문객이 되어 맑은 논의에서 버림을 받은 이정(李楨)과 황준량(黃俊良) 같은 약간의 무리들을 도학으로 허여하기도 하고, 성현으로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왕복한 편지가 쌓여 책을 이루었습니다.⁶⁰⁾

이때는 이황이 조식과 성운에 대해 비판한 것이 주된 논점이었기 때문에, 황준량에 명확한 변무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그 한 달 뒤의 박여량(朴汝樑, 1554-1611)의 상소를 보면, 자신의 스승인 정인홍을 감싸며 정인홍이 비판한 이황과 이언적에 대해서도 함께 높이는 말을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황준량이 권문(權門)에 절개를 잃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⁶¹⁾

57) 『錦溪先生辨誣錄』 「儒臣大臣獻議」.

58) 『錦溪先生辨誣錄』 「星湖僿說抄」; 『星湖僿說』 卷15 人事門 「黃錦溪」.

59) 『文谷集』 卷17 「因李選上疏金震陽等褒贈. 龜城君伸冤. 黃俊良書院黜享議」·「因嶺儒疏黃俊良黜享當否議 丁卯」; 『打愚先生遺稿』 卷4 「黃俊良黜享議 丁卯」; 『退憂堂集』 卷8 「金震陽等褒贈. 龜城君伸冤. 黃俊良書院黜享議」·「黃俊良書院黜享當否議」.

60) 『承政院日記』, 光海君 3年(1611) 3月 26日 5번째 기사. “李滉於植與運, 一節之異端之, 不復顧惜, 至於趨時附勢, 嗜利無恥, 終始爲權姦之門客, 清議之所棄, 如李楨, 黃俊良等若干輩, 或許以道學, 或期以聖賢, 往復簡書, 積成卷軸.”

61) 『承政院日記』, 光海君 3年(1611) 4月 12日 1번째 기사; 『感樹齋先生文集』 卷6 「雜著」.

이는 정인홍에 의해 거론된 것이지만, 1692년 7월 박세채가 이세필(李世弼, 1642-1718)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 정인홍뿐 아니라 김장생(金長生, 1548-1631)도 황준량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고, 이는 2차 변무기의 출향 논의와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영남의 유생이 금계를 출향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조정에 와서 호소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의논하라 하셨는데, 나는 퇴계의 의견에 따라 금계를 배향할 것을 주장했고, 이단하도 같은 뜻이었으나 의지가 견고하지 못했다. 문상(文相)은 소재의 의견에 따라 출향을 주장하였다. 그때 이선이 글을 올려 금계의 죄를 지극히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논의는 사계(沙溪)에서 나온 것 같다. 문상은 대개 이미 관여하여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주장한 것이다. 내 생각에 사계의 논의는 그의 아버지인 황강(黃岡)에게서 나왔는데, 황강은 곧 그때 후배사론(後輩士論)이었고, 퇴계는 전배문견(前輩聞見)이었다. 이는 을사년의 일로 미뤄보면 알 수 있다. 조정에서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웠으나, 금계에 대한 일은 마땅히 그 학문이 퇴계의 뒤를 이었다는 논의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⁶²⁾

실제 이러한 논의는 김장생의 문집인 『사계유고(沙溪遺稿)』에서 나타나며⁶³⁾,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문집인 『매산집(梅山集)』에도 김장생의 제자인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황준량을 미워하여 그가 지은 『주자서절요』 발문의 삭거(削去)를 주장했다는 내용이 있다.⁶⁴⁾ 이를 통해 황준량의 출향이 조정에서 논의되며, 출향의 이유로 당파에 대한 부분이 저변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당시 황준량의 출향을 발의한 이선을 비롯해 이에 찬성한 김수항이나 이상, 김수홍 등은 대개 노론(老論)의 인물들로, 송시열과 김장생의 제자이거나 추종자였던 반면 박세채는 소론(少論)의 영수로, 서인(西人)의 당론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퇴계학파를 추송하는 남인(南人)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경향이

從仕日記. “若以滉不絕李禎黃俊良爲非 則李禎本非不善之士, 黃俊良少時雖有失身權門之謂, 晚年向學, 能自修飾. 以賢者樂育之心, 豈可追咎已往. 以絕其向善之誠乎?”

62) 『南溪先生文集(續集)』卷12 「答李君輔問 東儒師友錄○壬申七月」. “往歲嶺儒有黜享錦溪之舉, 來訟于朝. 命議其當否. 鄙主退溪伸錦溪, 李相季周亦做此意而不能堅. 文相則主蘇齋伸黜享者, 其時 李擇之上章, 極言錦溪之罪. 今想此論出於沙溪, 文相蓋已與知而然也. 愚意沙論原於黃岡, 黃岡即其時後輩士論, 退溪即其時前輩聞見. 以乙巳事推之可知. 難以在朝與否論也. 然錦溪一款, 當以其學問之後退溪言論爲主.”

63) 『沙溪遺稿』卷3 「答金獻問目」. “黃俊良, 不吉之人. 附托乙巳權姦, 爲四館時, 士類異議之人. 稱以逆黨. 多數停舉. 其人如此, 退溪先生不知而取之. 其所作跋文, 不可廁於朱子書中, 當削去也.”

64) 『梅山集』卷52 「雜錄」. “同春嚴於淑慝之辨, 嘗觀朱書節要, 亟取刀割去黃俊良所著跋文.”

있었다. 이 때문에 퇴계의 제자인 황준량의 출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된 뒤, 이때 우의정에 오른 김덕원의 주장에 의해 황준량의 복향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2차 변무기는 황준량이 복향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변무 역시 1차 변무기의 주장에서 크게 진보된 점은 없었다. 다만 황준량이 이현보의 손자사위로서 더 이른 시기에 퇴계와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한강집(寒岡集)』에 나타난 황준량에 대한 평가가 새로운 근거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황상의 증거로, 강유선을 정거시킨 인물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전문의 오류나 동명이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어진 것이었다.

3. 3차 변무기

3차 변무기는 1865년 변무록 간행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변무사실」에 수록되어 있다.

그 후 사구와(四求窩) 김덕안(金德安)이 반궁(泮宮)에 들어가 한 늙은 상사(上舍)를 만났는데, 해서인(海西人)으로 들어 아는 것이 많았다. 그가 말하길 “당시에 해서에 급계와 성명이 같은 사람이 학정이 되었는데, 일찍이 권간에 아첨하였다가 권간이 몰락하자 마침내 사라져 소문도 알 수 없다. 급계가 무고를 받은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했다. 영묘 을미년(1775) 사구와 김공의 손자 응연(應淵)이 그 집안에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이와 같다.

또 해주(海州) 진사(進士) 최봉환(崔鳳煥)이 일찍이 순흥에 와서 살았는데, 또한 이 사람에 대해 말했다. 마을에 주천이 정거되었을 때 학정을 지냈던 사람이 선인을 무고하다가 폐고(廢錮)되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더욱 상세하였다.⁶⁵⁾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금계선생변무록』 「추록(追錄)」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김덕안(1672-1752)이 반궁에 갔을 때 한 상사를 만나

65) 『錦溪先生辨誣錄』 「郁陽書院從祀後順與人作變辨誣事實」. “其後四求窩金德安鳩齋之子入泮中遇一老上舍, 海西人博聞多識. 語此嗟惋曰當時海西有與錦溪同姓名 而爲學正者 嘗譎附權奸. 權奸敗後遂湮沒無聞. 錦溪之被誣 卽以此人也. 英廟乙未金公之孫應淵追記其庭訓如此. 又有海州進士崔鳳煥嘗來寓順興亦言此人. 在其鄉而停舉舟川時官學正竟坐誣善而廢錮. 其言又加詳.”

강유선을 정거시킨 황준량과 동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를 자신의 손자인 응연에게 전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응연은 이 사실에 대해 알려진 상사의 성이 이(李)였다는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하나, 다만 『국조방목(國朝榜目)』을 가져다 고찰하니, 해주에 과연 그 사람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⁶⁶⁾ 그리고 이후 1836년에 황준량의 10대손인 황대린(黃大麟, 1784-1853)이 순흥으로 이사 온 최봉환(1788-?)을 통해 그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3차 변무기 당시에는 황준량의 출향 논의가 없었지만, 2차 변무기까지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었던, 강유선을 정거시킨 황준량이 금계와 동일 인물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었기에 이에 대한 변무록을 간행함으로써 완벽한 변무를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범린은 발문에서 변무록을 더 이른 시기에 간행하고자 했는데, 그때 간행했다면 옛날과 시기 차이가 크지 않고, 그 일에 대한 논의가 더욱 상세했을 것이나 이 추록에 대해 거론되지 않았으며 아쉬워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기가 더 멀어졌고, 당시의 일에 대해 상세하지 않은 자도 있으나, 또한 시기하고 섭섭해하며 남몰래 무고를 자행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니, 이 변무록을 통해 그런 논의를 그치게 하고자 간행하게 되었다고 했다.⁶⁷⁾

변무록이 간행된 뒤의 상황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⁶⁸⁾, 1866년(고종 3) 10월에 김병학(金炳學)의 건의에 따라 황준량을

66) 『錦溪先生辨認錄』 「追錄」. “不佞時尚少, 到今追憶已不記上舍姓上舍姓名及何州人. 又不能的記. 其所謂學正者 在海西何郡. 後復取考國朝榜目 則海州果有其人.” 하지만 『國朝榜目』을 확인한 결과 황준량과 같은 姓名의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김응연이 확인했던 책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海州黃氏는 족보를 간행한 적이 없어 인물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며, 『長水黃氏世譜』나 『昌原黃氏世譜』에서 황준량과 동명의 인물을 찾아봤으나, 생몰년이나 약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성명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었다.

67) 『錦溪先生辨認錄』 「跋文(黃範麟)」. “父老及鄉長德掇拾其文字 嘗欲壽梓廣布 而其時去古未遠, 知其事甚詳 固無事於是錄. 暨今賢德寢遠士趨日渝當世之掌考者 亦或不詳 而又有猜憾者 陰肆其誣吁 亦險矣. 此錄其可已乎.” 처음 同名異人이 있었음을 확인한 1775년 당시에 변무록을 간행하지 않고, 1865년에야 변무록을 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는 황준량 후손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다방면의 고찰이 이뤄진 뒤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황준량 후손가에는 이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김응연에 대한 기록이 1775년, 최봉환에 대한 기록이 1836년, 李彙瓚이 지은 追錄이 1852년에 작성된 것을 통해 변무록을 간행하기 위한 준비는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68) 『高宗實錄』, 高宗 3年(1866) 10月 30日 2번째 기사.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추증한 것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금계종가의 문서를 살펴보면, 1866년 11월에 황준량과 그의 처 이씨를 증직하는 교지가 내려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⁶⁹⁾

실제 황준량의 증직에 변무록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금계선생변무록』에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고, 뒤표지 이면에 붙은 문서 ‘금계황선생사실(錦溪黃先生事實)’의 초고본이 금계종가 문서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금계종가에서 왕실에 바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⁷⁰⁾ 또한 황준량의 추증을 건의한 김병학이 금계종가로 보낸 편지가 소장되어 김병학과 금계종가 사이에 교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⁷¹⁾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과 황준량의 증직 시기를 비교했을 때, 김병학의 추증 건의가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으로 추증이 이뤄지고, 『금계선생변무록』의 내용을 통해서도 그동안 논의된 무고에 대한 이의 없는 변무가 이뤄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IV. 『금계선생변무록』의 구성 및 형태서지적 고찰

1. 『금계선생변무록』의 구성

『금계선생변무록』의 전체적인 구성(構成)은 김휘준(金輝濬)의 발문(跋文)에서, 본문의 상세한 구성은 황범린의 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archive.history.go.kr/) - 소수박물관 평해황씨 금계종가 기탁자료 - (자료번호) SMGG275~SMGG276

70)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archive.history.go.kr/) - 소수박물관 평해황씨 금계종가 기탁자료 - (자료번호) SMGG323~SMGG325.

71)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archive.history.go.kr/) - 소수박물관 평해황씨 금계종가 기탁자료 - (자료번호) SMGG303~SMGG307. 다만, 금계종가에 소장된 편지는 1869-1871년 사이의 것으로, 1866년 이전 것은 없기 때문에 교류활동이 증직 이전인지, 증직 이후 시작된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이 무고의 근원은 마땅히 먼저 제시하여 그 변무의 기반으로 삼고, 변문은 중요하면서도 상세한 것 수십 편을 모았고, 갖추어 만든 여러 설을 주변에서 채록하여 함께 추록으로 붙여 한 권으로 만들어, 대략 후대에 변무하였다.⁷²⁾

대개 무고가 종사(從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첫머리에 종사할 때의 봉안문과 열읍의 통문을 수록하여 권을 시작하는 뜻으로 삼았다. 다음은 변무 시 소, 계, 통장 등의 편이니, 홍목재의 서간·성호 이익의 성호사설 가운데 있는 말에 갖추어 고찰할 만한 것을 초록하였고, 추록 2편을 붙였으니, 곧 해주에 성명이 같은 자가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⁷³⁾

이를 종합하면 먼저 무고가 일어나게 된 근원에 대한 사실을 제시한 뒤, 종사와 관련된 봉안문이나 통장을 기재하고, 변무를 위해 작성한 상소문, 계문, 통장 등을 수록하였다. 그 후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명망 있는 인물들의 글을 채집하여 수록하고, 이어서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추록으로 실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표1- 『금계선생변무록』의 구성

	내용		내용
①	序文 (李彙載)	15	道儒查辨呈文
②	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辨証事實	16	醴泉士林通道內文 丁卯
③	李選信誣斥享疏	17	安東鄉校道會通太學文
④	郁陽書院奉安文 己酉 (金鳩齋)	18	道儒辨誣疏
⑤	還安告由文 乙卯 (曹梅湖挺融) ⁷⁴⁾	19	又疏
⑥	復享告由文 己巳 (鄭八松)必達	20	又疏
⑦	陶山士林單子 壬寅	21	禮曹回 啓
⑧	屏山道會通本院文	22	儒臣大臣獻議 (朴世采, 李端夏)
⑨	鼎山道會通紹修文	23	復享關文
⑩	本院通道內文 己酉	24	洪木齋汝河 答權子韜銳 書
⑪	順興人作變後本鄉通道內文 甲寅	25	李星湖溪僿說抄
⑫	甘泉道會通道內文 (李懶隱)	26	追錄 (金應淵, 李彙發)
⑬	道內通太學文 乙卯	27	跋文 (金輝濬)
⑭	太學答道內文	28	跋文 (黃範麟)

72) 『錦溪先生辨誣錄』 「跋文(金輝濬)」. “此誣之原也. 宜首揭之以基其辨, 辨文撮其要而詳者數十篇 而傍采可備諸說并追錄, 附爲一卷 畧辨于後.”

73) 『錦溪先生辨誣錄』 「跋文(黃範麟)」. “蓋誣之作由於從祀, 故首錄從祀時 奉安文及列邑通章以爲開卷之義, 次以辨誣時疏啓通章等篇 而如洪木齋書·李星湖僿說中語可以備考者 抄而附之追錄二篇 乃記海州同姓名之事.”

74) 梅湖는 조우인(曹友仁)의 호(號)이며, 조정용(1598-?)은 조우인의 아들이다. 조메호와

『금계선생변무록』의 구성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⁷⁵⁾

표1에서 ①은 서문, ②-②6은 본문, ②7과 ②8은 발문으로, 본문에 서문과 발문을 갖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본문은 단순한 시간 순서가 아닌 주제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를 감안하여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②의 「변무사실」에서 1차, 2차, 3차 변무기의 모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뒤, ③에서 출향 주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 중 가장 중심적인 이선의 상소를 제시하였다.⁷⁶⁾ 그리고 ④-⑥에서 옥양서원에 황준량을 처음 배향했을 때, 1675년 환향했을 때, 1689년 복향했을 때의 봉안문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처음 옥양서원 창건 당시 황준량 배향을 논의했던 글(⑦), 1차 변무기에 있었던 영남의 각 지역과 서원에서 황준량의 옥양서원 배향을 지지하는 글(⑧, ⑩-⑫), 소수서원을 질타하는 글(⑨), 작변인이 태학에 올린 글에 대한 변무문(⑬), 이에 대한 태학의 답문(⑭)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2차 변무기에 조정에서 일어난 출향 논의에 대해 올리는 변무 상소(⑮, ⑰-⑳)와 작변인들이 다시 태학에 올린 글에 대한 변무문(⑰), 영남지역 내에서의 논의(⑱), 복향에 대한 예조의 회계문(㉑), 대신들의 헌의(㉒) 등을 기재하고, 복향을 허가하는 관문(㉓)을 수록하였다. 이어 조정에서의 논의가 아닌 문집이나 기타 책에서 나타난 당시 선현의 논의(㉔, ㉕)를 채록하였다. 마지막에는 3차 변무기의 주된 근거가 되는 김응연과 이휘발의 추록자료(㉖)를 수록하였다.

『금계선생변무록』이 간행된 19세기에는 변무록이 본문으로만 구성되던 단계에서 점차 서문과 발문을 갖춘 단계로 정형화되어가고 있었는데⁷⁷⁾, 이 책 역시 서문과 발문을 갖추고, 본문에 관련 증거 글과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글을 채록하여 이를 중심으로 나열하는 방식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정용을 동시에 적었으므로 이는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글의 작성 시기가 을묘년(1675)이므로, 작자는 조정용으로 추정된다.

75) 『금계선생변무록』은 두 분이 있으나, 목차의 순서는 두 분이 모두 같다. 여기서는 장서각 소장 9행 20자본의 목차를 기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 'IV장 2. 『금계선생변무록』의 형태서지적 고찰' 참조.

76) 『錦溪先生辨誣錄』 「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辨誣事實」. “遂輯前後文蹟爲此錄. 李選斥享誣疏附于下 興人構誣諸條與李疏一串 而在辨說中故不載.”

77) 권석창, 앞의 논문(2013), 36-54쪽.

2. 『금계선생변무록』의 형태서지적 고찰

이 책을 간행한 황범린(黃範麟, 1823-1903)은 황준량의 10대손으로, 자(字)는 치구(禔九), 호는 소하(小下)이며, 본관은 평해이다. 조부는 황윤하(黃潤河)이고, 부친은 황지간(黃之幹)이다. 1872년(고종 9) 진사시(進士試)에 입격하였으며, 장수(長壽)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품계를 받았다. 경술(經術)에 뛰어나고 명망이 있어 여러 사람에게 추중(推重)되었다. 유집(遺集)이 있다.⁷⁸⁾

각 대학교 도서관과 주요 소장처에서 『금계선생변무록』을 검색한 결과 이 책은 2종이 나타나는데, 모두 목활자본(木活字本)이었다. 당시에 목활자로 변무록을 간행한 이유는 목활자 이용이 활발했던 유행을 반영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목활자의 재활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⁷⁹⁾ 또한 변무록은 대개 필사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간행된 경우에도 주변에만 배포하였기 때문에 간행부수가 적었다.⁸⁰⁾ 이 때문에 책판으로 간행하여 남겨두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한 목활자를 재활용하여 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목활자본 두 종 가운데 한 종은 9행 20자본(A본)이며, 다른 한 종은 10행 20자본(B본)이다.⁸¹⁾ A본과 B본을 대조하면 표2와 같다.⁸²⁾

이 두 본을 대조하면 행자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먼저 활자의 형태가 이종(異種)임이 확인된다. 사용된 목활자의 형태적 특징에서 A본은 글자 획이 두꺼운 반면 B본은 얇으며, 활자의 가로·세로의 비율에서도 차이가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A본의 활자는 다소 뭉툭하고

78) 『各司曆錄』 『慶尙監營啓錄』, 고종 9년(1872) 8월 26일 기사; 黃炳 刊編, 『平海黃氏世譜』(月松追遠齋, 1934). “純廟癸未生, 壽通政大夫, 經術雅望, 衆所推重. 有遺集. 癸卯十二月十日卒, 壽八十一. 墓郡南外鳳岩村後辛坐. 配淑夫人眞城李氏, 父祐純, 忌三月十五日墓.”

79) 권석창, 앞의 논문(2013), 59쪽.

80) 실제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 부수는 관련 기록의 부재로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1917년 간행된 『惟一齋先生實紀辨破錄』의 경우에 비취보면, 70질 정도가 간행되었다. 이 역시 보유한 활자는 없었으나, 활자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탁하여 간행하였음이 편찬자의 일기에서 나타난다. 권석창, 앞의 논문(2013), 74쪽.

81) 이후 9행 20자본은 A본으로, 10행 20자본은 B본으로 假稱하였다.

82) A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4713), 영남대학교(古味991.1-황준량) 등에, B본은 고려대학교(화산B8-A270), 계명대학교(811.65-황범린), 성균관대학교 존경각(B091-0022)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는 A본은 장서각 소장본을, B본은 계명대학교 소장본을 이용하였다.

표2- 『금계선생변무록』 9행 20자본(A본)과 10행 20자본(B본) 대조

	9행 20자본	10행 20자본
서명	錦溪先生辨誣錄	錦溪先生辨誣錄
저자	黃範麟等 編	黃範麟(朝鮮) 編
판본	木活字版	木活字本
책수	1卷 1冊(68張)	1冊
판식	四周單邊, 半郭 21.4×16.0cm, 內向二葉花紋魚尾; 30.3×19.6cm	四周單邊, 半郭 21.8×16.0cm, 內向二葉花紋魚尾; 29.4× 20.6cm
서발문	序: 李彙載 跋: 金輝濼, 黃範麟	序: 李彙載 跋: 金輝濼, 黃範麟
장서인	李王家圖書之章	歸隱齋藏 ⁸³⁾

거친 느낌을 주는 반면 B본에 사용된 활자는 좀 더 날렵하게 느껴진다.

내용적 측면에서 인명(人名)의 표현 방식과 글자의 출입상의 차이가 있다. A본에서는 인명을 표시할 때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기재한 데 반해 B본에서는 본문에 포함하여 대자(大字)로 기재하였다. 표3은 두 본의 소제목에 나타난 글자 출입을 비교한 것이다.⁸⁴⁾

A본과 B본은 행자수를 비롯한 판식, 활자의 종류, 인명의 표현 방식, 글자의 출입 등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두 번 간행되었는지, 또한 간행 시기는 같은지, 아니면 시간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판본 자체의 형태적 고찰을 비롯한 활자의 쓰임이나 당시의 여러 정황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9행 20자본 『금계선생변무록』의 목할자와 그 배경

『금계선생변무록』의 황범린이 쓴 발문을 살펴보면, 간행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83) 歸隱齋는 奉化郡 法田面 於旨里 鹿洞에 위치한 건물로, 歸隱 李敎英(1833-1895)이 만년에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을 하던 곳이다. 이교영의 자는 樂三, 호는 귀은, 본관은 眞城이다. 퇴계의 叔父인 松齋 李隅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李得魯이다. 1876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며, 영해 부사, 청송 부사를 역임하였다. 문집과 『宋書要訓』을 남겼다. 響山 李晚燾의 행장이 있으며, 西山 金興洛이 묘갈을 찬하였다. 배위는 淑人 豐山金氏이다.

84) 본문에서도 물론 글자의 출입이 나타나지만, 문(文意)의 차이는 없다. 다만 본문의 내용과 소제목을 살펴보면 9행 20자본에 비해 10행 20자본의 내용이 좀 더 상세하고, 윤문(潤文)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금계선생변무록』 9행 20자본(A본)과 10행 20자본(B본) 소제목 비교

9행 20자본	10행 20자본
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辨誣事實	郁陽書院從祀後順興人作變 變 辨 誣事實
李選信 ⁸⁵⁾ 誣斥享疏	李選 信 誣 斥享疏
郁陽書院奉安文 己酉 金鳩齋	郁陽書院奉安文 己酉 金鳩齋 啓光
還安告由文 乙卯 曹梅湖 挺融	還安告由文 乙卯 曹梅湖 挺融
復享告由文 己巳 鄭八松 必達	復享告由文 己巳 鄭八松 必達
陶山士林單子 壬寅	陶山士林單子 壬寅
屏山道會通本院文	屏山道會通本院文
鼎山道會通紹修文	鼎山道會通紹修文
本院通道內文 己酉	本院通道內文 己酉
順興人作變後本鄉通道內文 甲寅	順興人作變後本鄉通道內文 甲寅
甘泉道會通道內文 李懶隱	甘泉道會通道內文 李懶隱 衷隱
道內通太學文 乙卯將還安彼輩又作亂沮之潛爲文 誣告太學故以此辨之	道內通太學文乙卯將還安彼輩又作亂沮之潛爲文 誣告太學故以此辨之
太學答道內文	太學答道內文
道儒查辨呈文 自乙卯還安後彼輩附訐京宰丙寅李 選上疏誣斥下查呈辨	道儒查辨呈文 自乙卯還安後彼輩附訐京宰丙寅李 選上疏誣斥下查呈辨
醴泉士林通道內文 丁卯	醴泉士林通道內文 丁卯
安東鄉校道會通太學文 查辨後彼輩又誣通太學故 辨之	安東鄉校道會通太學文 查辨後彼輩又誣通太學故 辨之
道儒辨誣疏 丙寅查辨後卽爲此疏而爲政院所沮未 得 登徹柳萬軒製	道儒辨誣疏 萬軒柳世鳴製 丙 寅查辨後爲此疏而 爲政院所沮未得 登徹
又疏 丁卯更爲此疏始得 登徹而又未蒙 允權荷塘 製有再呈疏辭意大同故畧之	疏 進士金世鍾製 丁 卯更爲此疏始得登徹而又未 蒙 允有權荷塘斗寅再 呈疏辭意大同故畧之
又疏 金蘆洲所製似與前疏同時出而敘先生學行處 全而尤詳故錄之	疏 金蘆洲兌一製 似與前疏同時出而敘先生學行處 處全而尤詳故錄之
禮曹回 啓	禮曹回 啓
儒臣大臣獻議	儒臣大臣獻議
復享關文 己巳金休谷 啓辭載此關文故不別錄	復享關文 己巳金休谷 德遠 啓辭載此關文故不別錄
洪木齋汝河答權子韜執書	洪木齋汝河答權子韜執書
李星湖翼僊說抄	李星湖翼僊說抄
追錄	追錄

85) 信은 본래 간인된 글자를 지우고, 그 위에 따로 한 글자만 찍은 것으로 보인다. 글자 아래에 지운 흔적이 남아 있다. 10행 20자본을 참고했을 때 본래 構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고를 꾸몄다는 것(構誣)과 무고를 믿었다는 것(信誣)에서 오는 文意의 차이로 수정한 듯하다. 여기서는 수정에 따라 信으로 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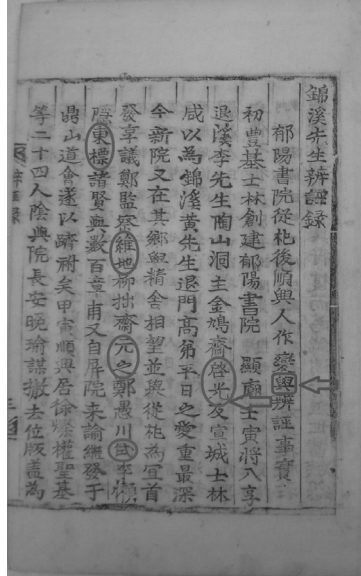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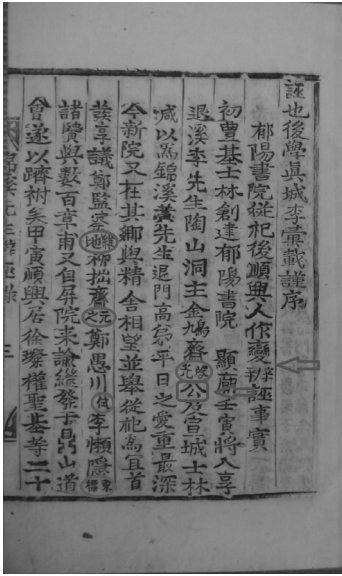


그림1-『금계선생변무록』 9행 20자본(A본)(左), 『금계선생변무록』 10행 20자본(B본)(右)

다만 물력이 넉넉지 않아 간행하기 어려워 장차 활자를 빌리려 하였다. 상산(商山) 김태장(台丈, 鎭河)께서 (이 일을) 듣고 말씀하시길, “성대한 일이다. 사림들도 마땅히 도와서 성취시켜야 할 것인데, 이것이(활자) 이미 내게 있는데, 어찌 빌려 쓰려고 하는가?” 하셨다. 빌리고서, 마침내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 일이 끝나게 되었다.⁸⁶⁾

이상의 글을 살펴보면, 황범린이 목활자를 대여하여 『금계선생변무록』을 간행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이때 김진하(金鎭河, 1786-1865)⁸⁷⁾의 도움으로 책을 간행할 수 있었다. 그는 영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퇴계의 학문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⁸⁸⁾, 퇴계의 고족제자(高足弟子)로 알려진 황준량의 변무활동에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86) 『錦溪先生辨誣錄』 「跋文(黃範鱗)」. “顧物力凋殘難以尤刊須將貫填活字. 商山金台鎭河丈聞之曰盛事也. 士林亦宜助成, 而此既在我何用? 貫爲遂始役閱月而告訖.”

87) 김진하의 자(字)는 치청(釋淸)이고, 호(號)는 황암(篁巖)이다. 본관은 함창(咸昌)이며, 거주지는 경상북도 영천(榮川)이다. 증조부는 김세진(金世槌)이고, 조부는 김구환(金龜煥)이다. 부친 김기중(金基中)과 모친 김구련(金龜鍊)의 딸 의성김씨(義城金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1841년(헌종 7)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관직은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이르렀다. 평생 퇴계 이황의 학문을 숭배하였다. 유고로 『황암집(篁巖集)』이 있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index.aks, 검색일: 2016. 11. 14.)

88) 『篁巖先生文集』 卷6 「行狀(金禹昌)」. “嘗取退陶先生聖學十圖, 貼於座右, 遂節吟詩以自警.”

이를 통해 본다면, A본과 B본이 동시에 간행되지 않았음은 짐작할 수 있다. 목활자를 마련하기도 어려워 김진하 소장의 목활자를 빌려 간행한 상황에서 목활자 2종을 사용하여 한꺼번에 간행했다는 것은 수공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계선생변무록』 두 본에 쓰인 활자가 서로 다르므로, 김진하가 기존에 목활자를 사용해 찍었던 서적과 비교한다면, 1865년 당시에 간행한 판본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하의 문집인 『황암집(篁巖集)』을 살펴보면, 그의 벼슬활동과 저작 활동, 교유관계를 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종오대조고백남선생문집발(從五代祖考白南先生文集跋)」⁸⁹⁾에서 『백남집(白南集)』 간행에 참여했던 사실이 나타난다.

『백남집』⁹⁰⁾은 김진하의 종5대조인 김시빈(金始鎭, 1684-1729)의 문집으로, 1858년(철종 9)에 목활자로 간행되었다. 김시빈은 생전에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집안의 화재(火災)로 거의 소실되었다고 한다. 이후 종중손(從曾孫) 김구환(金龜煥)이 불타고 남은 가장본(家藏本)과 지구(知舊)들의 전록(傳錄)을 널리 수습하여 본래의 20-30% 정도를 수집하였지만, 후손도 없고 가문도 한미하여 판각을 할 수는 없었다. 이후 1847년(헌종 13) 종현손(從玄孫) 김기현(金騏獻)이 이종상(李鍾祥, 1799-1870)과 함께 교감한 뒤 발문까지 받았고, 1849년(헌종 15)에는 사현손(嗣玄孫) 김기직(金基直)이 임종 시에 간행을 부탁하므로, 문중의 친족들이 약간의 재원을 마련하여 대략적으로 문집 간행을 위한 준비를 해두었다. 이를 가지고 1853년(철종 4)에 종5대손 김진하와 종현손 김기현이 김종걸(金宗傑)과 다시 수교(讎校)하여 본가(本家)에 보관하였고, 5년 뒤인 1858년에 김기현과 김진하가 문중과 상의하여 초본 중 교감(校勘)이 미진한 부분은 다시 저작 시기를 상고하여 교정(校訂)·찬차(撰次)한 뒤 활자로 간행한 것이다.⁹¹⁾

이를 통해 김진하가 소장한 목활자의 출처는 본래 『백남집』을 간행하

89) 『篁巖先生文集』 卷3 「從五代祖考白南先生文集跋」. “癸丑冬, 鎭河與族叔騏獻氏, 携本稿上石寺. 仍邀桐村金上舍宗然甫, 略加讎校, 歸而藏本家. 逮今春, 門議譜, 始付剞劂氏. 鎭河遂就草本中未盡勘刷者, 更攷初晚. 商訂位置.”

90) 『白南先生文集』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우촌古3648-10-139) 金始鎭 著, 木活字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哲宗 9(1858), 6卷3册: 四周雙邊半郭 22.7×17.3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34.5×21.5cm.

91) 徐仁淑, 『(影印標點) 韓國文叢刊 續66, 白南集』 해제(한국고전번역원, 2008).

표4- 『금계선생변무록』 9행 20자본(A본)과 『백남집』의 활자 비교

『금계선생변무록』 9행 20자본	『백남집』	『금계선생변무록』 9행 20자본	『백남집』
			
(01-02b-09-10) ⁹²⁾	(04-16b-09-16)	(01-68b-08-12)	(06-26b-08-06)
			
(01-03a-02-03)	(01-22a-03-11)	(01-24a-05-03)	(06-26b-10-19)
			
(01-14a-04-16)	(03-19b-07-07)	(01-41b-01-14)	(04-03a-07-08)
			
(01-45a-08-20)	(04-10b-01-08)	(01-26b-03-04)	(05-20b-10-01)
			
(01-03a-08-03)	(06-26b-06-18)	(01-51b-03-13)	(06-13a-07-08)

기 위해 마련해두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백남집』과 A본을 비교한 결과 A본과 『백남집』이 동일한 활자를 이용해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⁹³⁾ 표4는 같은 활자를 사용한 부분을 나타낸 것이다.⁹⁴⁾

2) 10행 20자본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 정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본은 1865년 황범린에 의해 간행된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B본은 언제 간행되었으며, 간행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 주목한 것은 이 글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계명대

92) 활자 이미지 아래의 숫자와 알파벳은 ‘卷次-張次-行次-字次’를 나타낸 것이다. 『금계선생변무록』은 불분권 1책이므로 卷次를 권1로 표시했고, 張次는 앞면일 경우 a로, 뒷면일 경우 b로 표시하였다. 字次는 字數를 20자로 봤을 때로 나타낸 것이다.

93) B본을 제외하고, 『백남집』과 A본을 비교한 것은 A본이 1865년의 간행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의 III장 3에 언급한 바와 같이 ‘錦溪黃先生事實’이란 제목의 문서가 장서각 소장본 권말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1865년에 이 책이 간행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4) 목활자의 특성상 같은 글자라도 다르게 판각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따라서 간행에 사용된 모든 글자를 비교하기에는 시간적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교작업을 진행하며 찾은 몇 가지 글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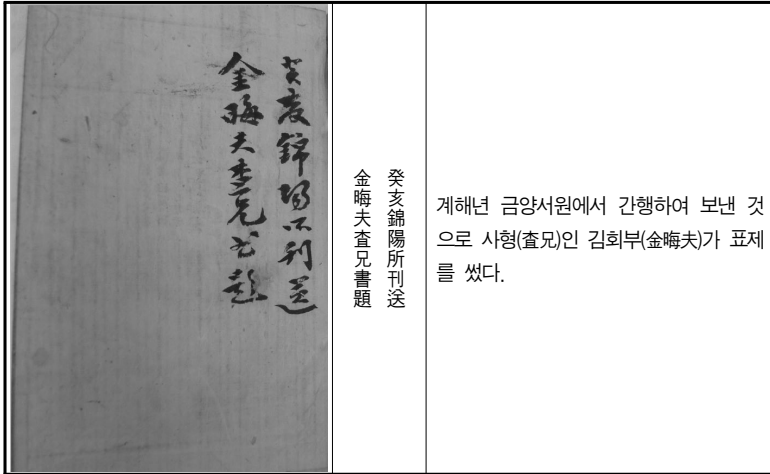


그림2-계명대 소장본 뒤표지 이면 사진(左), 탈초(中), 번역(右)

소장본의 뒤표지 이면에 나타난 다음의 기록이었다.

본문의 내용 중 발문이 쓰인 시기가 1865년이므로, 여기에 기재된 계해년은 그 이후인 1923년이나 1983년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1983년에 간행했다면, 오히려 현대에 가깝기 때문에 목활자가 아닌 다른 간행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1923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러한 가설로 B본을 1923년본으로 추정하고, 그때 당시 이 책의 간행과 관련된 인물을 금계 후손 가운데 살펴본 결과 황영래라는 인물을 찾을 수 있었다.

황영래(黃永來, 1860-1941)는 황준량의 13대손으로, 자(字)는 봉의(鳳儀), 호는 운초(雲樵)이며, 본관은 평해이다.⁹⁵⁾ 황영래가 이 책을 간행했을 것이라는 짐작은 그의 활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는 『평해황씨세보(平海黃氏世譜)』(1923년 간행)와 『금계선생문집』(1923년 간행), 『덕동재소추원록(德洞齋所追遠錄)』(1930년 간행)의 간행에 참여했다. B본의 간행 추정연도인 1923년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수의 서적 간행에 참여한 것이다. 서적의 종류도 족보, 문집, 추원록 등 다양한데, 공통점은 모두 조상이나 가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계집』의 경우는

95) 영주시청 수수박물관 편, 앞의 책, 14쪽; 平海黃氏大同譜廳 編輯, 『平海黃氏大同譜』 7卷(回想社, 1976), 1쪽.

기존의 내집과 외집으로 구성된 『금계선생문집』 가운데 내집만 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목판을 번각하거나 재활용하지 않고, 새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⁹⁶⁾

덕동재사(德洞齋舍)는 8대조인 황유정(黃有定, 1343-?)⁹⁷⁾을 모신 곳으로, 황유정의 묘를 실전하여 찾으려 노력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여 굴착했던 곳에 다시 봉분을 쌓고 신위를 모시고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⁹⁸⁾ 또한 도산서원 소장 고문서 가운데 1913년에 황영래가 도산서원에 보낸 간찰이 1점 있다. 그 내용은 선조(先祖)의 유사(遺事)와 선조가 사문(師門)과 수수(授受)한 문건을 초록(抄錄)하여 보내니 살펴서 곧 발간될 『도산금문제현록』에 현록(懸錄)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아울러 퇴계가 황수량(黃遂良)에게 보낸 답서(答書) 1편도 등초(謄草)하여 보내니 살펴주기 바란다고 했다.⁹⁹⁾

이로 미뤄봤을 때, 황영래는 조상 추수에 많은 힘을 기울였고, 서적으로 간행하여 유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본이 1923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근거가 있다. 연구를 진행하던 중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소장된 『금계선생변무록』을 살펴보았는데, 이 책의 배접지로 사용된 종이에 1923년 간행된 『금계집』에 퇴계가 쓴 「제문」의 내용 중 일부가 실려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¹⁰⁰⁾ 간혹 서책의 배접지로 이미 기능을 다한 고문서나 파지(破紙)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도 1923년 『금계선생문집』을 간행하며 남은 파지를 B본의 배접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미뤄볼 때 『금계선생문집』과 『금계선생변무록』이 함께 간행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96) 이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고46-가696-2)을 살펴본 후 확인한 결과로, 1923년 간행한 판권지가 붙어 있다. 다만, 다른 소장처에 2책으로 된 판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는 『금계집』의 판본 계통이 아닌 『금계선생변무록』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1923년 간행된 『금계집』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97) 平海黃氏忠敬公派譜所 平海君廟院 編, 『平海黃氏世譜』(平海黃氏忠敬公派譜所 平海君廟院, 2001). “고려 후기 문신으로, 號는 米困, 本貫은 平海이다. 1343년 黃瑾과 安軸의 딸인 順興安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재질이 비범하여 12세 때 시를 지었는데, 이를 試官이 보고, 과거에 응시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일찍이 과거에 급제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고 글 읽기만 즐겼다. 1390년 草溪郡守가 되었다가 漢城判尹을 거쳐 工曹典書에 이르렀다.”

98) 영주시청 소수박물관 편, 앞의 책, 16-17쪽.

99) 유교넷(ugyo.net/-)고문서-도산서원고문서-서간·통고류-간찰0099.

100) 1755년 간행된 『금계집』 중간본과도 대조하였으나, 글씨체와 위치가 1923년 간행된 삼간본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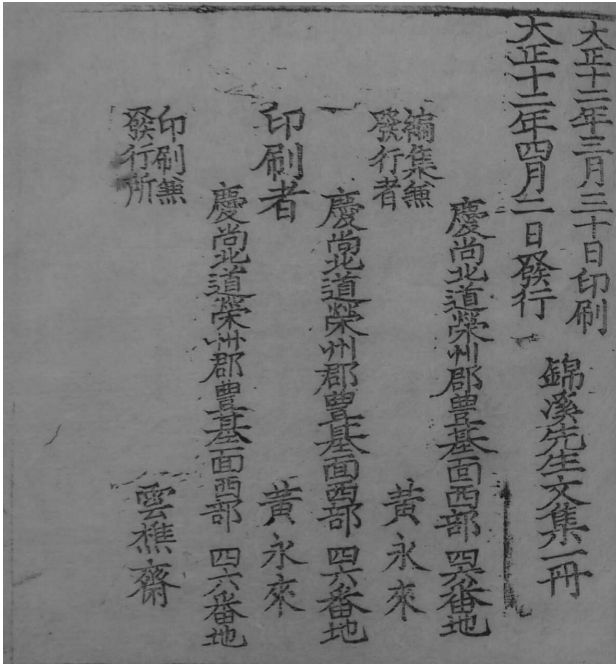


그림3- 1923년 간행 『金계선생문집』 판권지

이상과 같이 계명대학교 소장본 『金계선생변무록』의 뒷표지 이면의 기록과 성균관대학교 소장본 『金계선생변무록』의 배접지에서 1923년 간행 『金계선생문집』의 간행지가 나온 것을 통해 이 책이 1923년에 간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맺음말

변무(辨誣)는 억울한 일에 대해 변별하여 밝히는 것으로, 변무록(辨誣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변무록 가운데 『金계선생변무록』을 통해 황준량의 옥양서원 출향에 관한 무고와 그에 대한 변무과정, 『金계선생변무록』의 간행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황준량의 생애와 퇴계학과에서의 그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는 47세의 비교적 짧은 생애를 살았고, 퇴계학과에 입문한 시기도

대개 관직에 나아간 이후로 추정되어, 다른 제자들에게 비해 수학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계학과에서 황준량은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퇴계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는 생전에 황준량과 퇴계가 주고 받은 편지를 통해서, 황준량의 사후에는 퇴계가 손수 황준량의 행장과 제문, 만사를 짓고, 그의 문집을 손수 편차했다는 것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풍기지역에서는 옥양서원에 퇴계를 주향으로, 황준량을 종향으로 배향하여 모셨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황준량에 대한 부정적 논의도 있었는데, ‘황준량이 권신에게 빌붙어 선량한 무리를 해쳤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황준량의 출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음으로 황준량의 옥양서원 출향에 대한 변무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차 변무기는 1674년부터 1675년까지로, 황준량이 소수서원을 관장했을 때 원망을 품은 순흥인들이 서원에 난입하여 위판을 강제로 철거하였다. 그들은 노수신과 심희수가 쓴 강유선의 갈문과 지문을 근거로, 황준량이 권신에게 아첨하여 강유선을 정거시켰다는 무고를 자행했는데, 이에 대해 퇴계가 쓴 행장에 기재된 황준량의 관력과 강유선이 정거당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근거로 변무하였다.

2차 변무기는 1686년부터 1689년까지로, 1차 변무기에는 풍기지역 내로 국한되었던 반면, 이때는 이선의 상소를 통해 조정에서 논의되었고, 그 결과 황준량이 출향되었는데, 출향에 찬성한 인물과 반대한 인물들을 살펴볼 때, 출향 이유의 저변에는 당파적 요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기사환국 이후 남인계열인 김덕원의 주청으로 결국 환향되었다. 이때의 변무 역시 1차 변무기의 주장과 함께 더 이른 시기부터 퇴계와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과 『한강집』에 나타난 황준량의 평가를 기반으로 했는데, 이는 정황상의 증거로, 강유선을 정거시킨 인물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의 오류나 별도의 인물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마무리된 것이었다.

3차 변무기는 1865년 변무록 간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1775년 김응연이 자신의 조부인 김덕안이 반궁에서 상사를 만난 경험을 기술하여, 황준량과 동명의 인물이 강유선 정거 당시에 학정으로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그 뒤 황대린이 최봉환을 만나 다시 황준량의 동명인(同名人)에 대해 더 소상한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당시에는 황준량의

출향 논의는 없었으나, 2차 변무기까지 증명할 수 없었던 동명인의 존재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책을 간행하여 변무를 완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간행 이후 1866년 김병학의 건의로 황준량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는데,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당시 왕실에 바친 것으로 추정되는 『금계선생변무록』이 소장되어 있고, 김병학이 금계종가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을 통해, 김병학의 추증 건의가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결국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을 통해 그동안 논의되었던 무고에 대한 변무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금계선생변무록』은 본문과 서문 및 발문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주제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를 감안하여 배치되었다. 첫머리에 전체적인 변무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변무 사실과 출향의 가장 중심 내용을 담은 이선의 상소를 제시하고, 이후 중향, 환향, 복향했을 때의 봉안문과 각 변무기별 통문과 상소, 관문을 수록하고, 마지막에 당시 선현의 논의와 황준량과 동명의 인물이 존재함을 기재한 추록을 수록하였다. 대개 『금계선생변무록』이 간행된 19세기는 변무록이 정형화된 구성을 갖춰가는 단계로, 이 책 역시 그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계선생변무록』은 2종의 판본이 있는데, 모두 목활자본으로 각각 9행 20자본과 10행 20자본이다. 2종의 판본은 행자수를 비롯해, 활자, 인명표시 방식, 글자의 출입 등에서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 중 9행 20자본은 1865년에 황범린이 김진하가 『백남집』을 간행하기 위해 마련한 목활자를 빌려 간행하였다. 그리고 10행 20자본은 1923년에 황영래가 간행한 것으로, 간행 배경에는 그가 1923년에 『평해황씨세보』와 『금계집』, 1930년에 『덕동재소추원록』의 간행에 참여한 것을 통해 조상 추송을 위한 의도가 있었고, 서적으로 간행하여 유포하는 방식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무록은 자신이나 선조에 대한 무고를 변명하기 위해 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으로 구성되기 쉬우므로 변무록의 내용을 맹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는 당시의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미시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1차 자료

『錦溪先生辨誣錄』(계명대학교 811.65-황범린 ㄱ,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B09I-0022, 장서각 K2-4713).

『錦溪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46-가696-2).

『陶山及門諸賢錄』(장서각 K2-400).

『白南先生文集』(국립중앙도서관 우촌古3648-10-13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archive.history.go.kr).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main.do).

유교넷(ugyo.net).

조선왕조실록(sillok.history.go.kr/main/main.do).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2. 단행본

民族文化推進會 編,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37, 錦溪集』. 民族文化推進會, 1989.

영주시청 소수박물관 편, 『世居 七百年 영주의 평해황씨 사람들: 2012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영주시청 소수박물관, 2012.

平海黃氏大同譜廳 編輯, 『平海黃氏大同譜』. 回想社, 1976.

平海黃氏忠敬公派譜所 平海君廟院 編, 『平海黃氏世譜』. 平海黃氏忠敬公派譜所 平海君廟院, 2001.

韓國古典翻譯院 編,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續66, 白南集』. 韓國古典翻譯院, 2008.

한명기 저,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_____,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 역사, 2009.

黃昞 刊編, 『平海黃氏世譜』. 月松追遠齋, 1934.

황준량 지음, 강성위·김상환 옮김, 『금계집』. 한국국학진흥원, 2014.

3. 논문

강성준, 「금계 황준량의 문학과 사상」.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권석창, 「朝鮮時代 辨誣錄 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_____, 「『佔畢齋金先生門徒添刊辨破錄』의 刊行과 門人錄」. 『서지학연구』 60집,

- 2014, 381-418쪽.
- 길진숙, 「주세붕의 『죽계지』 편찬과 시가관: 황준량과의 시가편입 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11집, 1997, 107-138쪽.
- 金健佑, 「『關西問答錄』의 간행과정과 휘판시비」. 『장서각』 14집, 2005, 5-34쪽.
- _____, 「1456년 河緯地遺券의 진위논쟁과 그 의미」. 『역사와 실학』 39집, 2009, 33-57쪽.
- 金暉綠, 「朝鮮後期 『同文彙考』의 編纂過程과 性格」. 『朝鮮時代史學報』 32집, 2005, 185-226쪽.
- _____, 「朝鮮初期 宗系辨誣의 展開樣相과 對明關係」. 『國史館論叢』 108집, 2006, 147-183쪽.
- _____, 「조선후기 대중국 변무 연구」. 『空土論文集』 58집, 2007, 37-58쪽.
- 김시향,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 선생(先生)과 풍기지역(豊基地域) 퇴계학맥(退溪學脈)」. 『퇴계학과 유교문화』 30집, 2001, 259-282쪽.
- 김종석, 「『陶山及門諸賢錄』의 集成과 刊行에 관하여」. 『퇴계학과 유교문화』 28집, 2000, 1-20쪽.
- _____, 「금계(錦溪) 황준량(黃俊良)의 사상과 퇴계학(退溪學) 계승 양상」. 『퇴계학보』 136집, 2014, 127-162쪽.
- 김호용, 「『光國志慶錄』에 관한 研究」.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우용순, 「주세붕의 백운동서원 창설과 국문시가에 대한 방향 모색: 황준량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35집, 1996, 295-313쪽.
- 윤천근, 「황준량의 역사의식」. 『退溪學』 2집, 1990, 83-101쪽.
- 이상필, 「하세응중가소장(河世應宗家所藏) 『변무(辨誣)』의 내용(內容)과 그 의의(意義): 정인홍(鄭仁弘)의 이황비판(李滉批判)을 중심으로」, 『영남학』 26집, 2014, 103-140쪽.
- 李成珪, 「明·清史書의 朝鮮 ‘曲筆’과 朝鮮의 ‘辨誣」. 『李公範教授停年記念東洋史論叢』, 知識産業社, 1993, 503-568쪽.
- 이종찬, 「月沙의 문학관과 辨誣錄」. 『한국한문학회연구』 2집, 1977, 69-93쪽.
- 장인진, 『嶺南 文集의 文獻의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전병철, 「『변무』와 내암 정인홍의 남명학 변호」. 『선비문화』 23집, 2013, 105-116쪽.
- 정만조, 「조선후기 경기북부지역 南人系 家門의 동향」. 『한국학논총』 23집, 2001, 77-120쪽.
- 정병설, 「조선후기 대중국 역사변무의 의미」. 『역사비평』 116집, 2016, 250-276쪽.
- 정호훈, 「愚潭 丁時翰의 활동과 17세기 후반 南人學界」. 『한국철학논집』 22집, 2007, 37-69쪽.
- 진나영, 「朝鮮時代に 刊行된 『功臣錄券』에 관한 書誌의 研究」. 중앙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2008.

최석기, 「黃俊良의 智異山 紀行詩에 대하여: 遊頭流山紀行篇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47집, 2011, 7-42쪽.

최재남, 「금계 황준량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집, 2000, 339-370쪽.

국문 초록

변무(辨誣)는 억울한 일에 대해 변별하여 밝히는 것으로, 변무록(辨誣錄)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헌을 일컫는다.

이 글에서는 변무록 가운데 『금계선생변무록(錦溪先生辨誣錄)』을 통해 황준량(黃俊良)의 옥양서원(郁陽書院) 출향(黜享)에 관한 무고(誣告)와 그에 대한 변무과정, 『금계선생변무록』의 간행 배경을 살펴보고자 했다. 황준량은 짧은 생애를 살았고, 퇴계(退溪)에게 수학한 시기도 짧았지만, 퇴계학파의 주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이 때문에 풍기(豊基)의 옥양서원에 황준량을 배향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황준량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었는데, 이러한 평가가 황준량의 출향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황준량의 출향에 대한 변무는 크게 세 시기에 걸쳐 이뤄졌다. 1차 변무기(1674-1675)는 황준량에게 원망을 품은 순흥인에 의한 것으로, 노수신(盧守愼)과 심희수(沈喜壽)가 쓴 강유선(康惟善)의 지문(誌文)과 갈문(碣文)을 근거로 황준량이 강유선을 정거시켰다는 무고를 했고, 이에 대해 퇴계가 쓴 행장을 근거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근거를 들어 변무하였다.

2차 변무기(1686-1689)는 이선(李選)의 상소로 인해, 조정에서 논의를 거쳐 출향된 일에 대한 것이다. 이때 역시 1차 변무기의 주장과 함께 황준량이 이현보(李賢輔)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 퇴계와 더 이른 시기부터 교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한강집(寒岡集)』에 나타난 황준량의 평가를 기반으로 변무를 시도하였다. 이때의 출향에 찬성한 인물과 반대한 인물을 살펴보면, 출향의 저변에는 당파적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차 변무기(1865)는 변무록 간행과 관련한 시기로, 1775년 김응연(金應淵)이 자신의 조부인 김덕안(金德安)이 반궁에서 상사를 만난 경험을 기술하여 황준량과 동명의 인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고, 그 뒤 황대린(黃大鱗)이 최봉환(崔鳳煥)을 만나 동명 인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증명할 수 없었던 황준량에 대한 무고를 변무할 수 있었다. 이에 황범린(黃範鱗)이 변무록을 간행하였고, 1866년 김병학(金炳學)의 건의로 황준량의 증직(贈職)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황준량의 무고에 대한 변무는 완성되었다.

『금계선생변무록』 본문과 서문 및 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주제를 중심으로 시간 순서를 감안하여 배치되었다. 이는 19세기에 나타난 변무록의 정형화된 구성을 갖춰가는 단계에서 나타난 구성 방식이다. 『금계선생변무록』은 2종의 판본이 있는데, 모두 목활자본으로 각각 9행 20자본과 10행 20자본이다. 이 중 9행 20자본은 1865년에 김진하(金鎭河)가 『백남집(白南集)』을 간행하기 위해 마련한 목활자를 빌려 황범린이 간행한 것이고, 10행 20자본은 1923년에 황영래(黃永來)가 족보, 선조의 문집 등 여러 책의 간행에 참여한 것을 통해, 조상 추승의 목적으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투고일 2016. 12. 19.

심사일 2017. 1. 18.

게재 확정일 2017. 2. 27.

주제어(keyword) 『금계선생변무록』(*Guemgyeseonsaengbyeonmurok*), 황준량(Hwang Junryang), 변무록(Byeonmurok), 변무(Byeonmu), 황범린(Hwang Byeomrin), 황영래(Hwang Yeongrae), 퇴계(Toegye), 육양서원(Ugyangseowon)

Consideration on Hwang Junryang(黃俊良)'s Exile from Ugyangseowon(郁陽書院) and Publication Background of *Guemgyeseonsaengbyeonmurok*(『錦溪先生辨誣錄』)

Kwon, Seok-chang

The Byeonmu(辨誣) is to discriminate unfair cases, and the Byeonmurok(辨誣錄) means the literature containing contents of such discrimin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icious prosecution(誣告) regarding Hwang Junryang(黃俊良)'s exile from Ugyangseowon(郁陽書院), the Byeonmu process of him and publication background of it, through the *Guemgyeseonsaengbyeonmurok*, in the Byeonmurok. In spite of short life and short period of learning under Toegye(退溪), Hwang Junryang became an important person in Toegye school. So, he was enshrined in the Ugyangseowon located at Punggi(豐基) province. The Byeonmu of his exiles were implemented across largely three periods. The first Byeonmugi(1674-1675) caused by Sun Heungin who cherished enmity against Hwang Junryang is based on Toegye's conduct mark against the malicious prosecution on the basis of Jimun(誌文) and Galmun(碣文) of Gang Yuseon(康惟善), which were written by No Sushin(盧守愼) and Sim Huisu(沈喜壽). The second Byeonmugi(1686-1689) is about the exile determined from a discussion based on an appeal by Lee Seon(李選) in the Court. Here, the Byeonmu was attempted based on the evaluation of Hwan Junryang, included in *Hangangjip*(『寒岡集』) along with the arguments in the first Byeonmugi. The existence of a factional factor underlying the exile is conjectured. The third Byeonmugi(1865) is a period related with the publication of Byeonmurok, where the Byeonmu was conducted by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a person of the same name, who could not demonstrated until the second Byeonmugi.

Guemgyeseonsaengbyeonmurok consists of the text, prologue and epilogue, and the text is arranged around the subject, given the order of time. This was a typical construction of the Byeonmurok appearing in the 19th century. *Guemgyeseonsaengbyeonmurok* is divided into two kinds of editions, both of which are the Wooden Type Printing Books with 9 lines 20 letters and 10 lines 20 letters, respectively. The first edition with 9 lines 20 letters was published by Hwang Byeomin(黃範麟) in 1865, by borrowing wooden movable type developed by Kim Jinha(金鎭河) to publish *Baek Namjip*(『白南集』). The second edition with 10 lines 20 letters was published by Hwang Yeongrae(黃永來) in 1923, for the worship of his ancestors.